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국가 순서별)

2021.3.4.(목) 10:00 외교부(재외국민안전과)

- ※ 아래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우리 정부의 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에 따라 4.13. 이후 관광 등 단기체류 목적으로 해당국 방문을 희망하는 우리 국민은 향후 해당국이 입국금지를 해제하여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협정이 재개될 때까지는 출국 전 해당국 사증(Visa)을 취득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해당국 리스트는 동 계시글 세 번째 첨부물에서 확인)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1	가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9.1.부터 코토카 국제공항의 국제선 항공 운항 재개(20.8.30.)(단, 육로 및 해로 국경은 봉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탑승 전 72시간 이내 검사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미소지 시 △외국인의 경우 입국 거부, △자국민의 경우 14일간 지정시설에서 의무 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유하여 가나로 입국하는 경우 첫 출국 국가를 기준으로 코로나19 검사 결과 발급 필요 ※ 입국 후 신속 진단키트 검사 실시(검사비용 자부담)하여 △음성인 경우 별도의 격리 없이 입국 가능, △양성인 경우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격리시설에서 의무 격리 7일 및 치료(최종 퇴원은 보건당국 검역지침에 따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발 전 온라인(http://myfrontierhealthcare.com/Home/Ghana)으로 검사비용 사전 지불 및 탑승 전 검사비용 결제 영수증 항공사에 반드시 제출
2	가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0.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봉 거주자, 외교관의 경우 입국 가능(단, 항공기 탑승 3일 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 소지(에티오피아 항공은 탑승 48시간 전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기도 함)) ※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관련 결정을 위해 사전에 유관당국에 통보 필요 ※ 20.3.20.부터 육로·해로·항공 국경 봉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7.1.부터 항공을 통한 국경 재개방
3	가이아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3일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시 음성확인서가 3일 이상 경과했을 경우 의무 샘플 검사(20.11.1.)
4	감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시 도착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시(20.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9.부터 한국 포함 21개국에서 출발한 승객의 경우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후 의무적 격리 실시(비용 자부담)
5	과테말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9.18.부터 육·해·공 국경 개방 및 항공편 운항 재개(20.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 입국) △만 10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항공사의 확인 시점으로부터 96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PCR 검사 또는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항원 검사의 음성확인서(반드시 영어 또는 스페인어 번역본) 제출, △연령에 상관없이 사전신고사이트(https://sre.gt)에서 건강상태확인서(Health Pass) 온라인 작성 후 확인, △체온 검사, △유증상자는 공항 검역관과 별도 인터뷰 및 검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부터 음성확인서 미지참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자부담) ※ (육로 입국) 만 10세 이상 모든 입국자는 육로 입국 시점으로부터 96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PCR 검사,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항원 검사의 음성확인서 제출(단, 정기적으로 육로를 통해 입출국하는 여행객과 화물차 기사의 경우 예외), 국경에 비치된 건강상태 문진표 수기 작성 ※ 과테말라 도착 이전 14일간 영국(북아일랜드 포함), 남아공에 체류한 외국인 대상 입국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적으로 입국 희망 시 보건당국 신고 후 최소 10일간 거주지 또는 본인 거주지 또는 별도 장소에서 격리 의무
6	그레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전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20.11.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전 그레나다 정부 홈페이지(http://covid19.gov.gd)상에서 건강증명서 양식 작성 및 제출 ※ 영국, 미국 등 고위험국가발 입국자의 경우 지정시설에서 4일간 격리
7	그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 지참 및 승객위치확인서(최소 입국 24시간 이전) 작성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포함 9개국을 제외한 비EU 국가의 경우 특별입국허가 신청 필요 ※ 입국 시 무작위 코로나19 검사 진행 및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 필수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 영국에서 입국 시 7일간 의무격리 조치 및 격리 종료 후 PCR 검사 실시
8	기니	▶ 20.7.17.부터 항공편을 통한 출입국 허용, 항공기 탑승 전 5일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검사 방식) 제출 의무 ※ 음성확인서를 소지하였어도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별도 시설에 격리 ※ 출국 시 출국 3일 전 기니 국립공중보건연구소(INSP)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건강상태신고서 제출
9	기니비사우	▶ 입국 시 출발 72시간 전 공인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건강상태, 출발지 및 도착지 연락처 등 제출 필요 ※ 발열 등 유증상자 대상 추가검사를 실시하며 및 결과 통보 및 보건당국 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주지에서 격리 ※ 의심환자가 탑승한 항공편의 모든 승객은 14일간 보건당국이 별도 관리
10	나미비아	▶ 20.9.1.부터 빈트후크 공항의 국제선 운항 재개 ※ 관광 목적 외 비즈니스 목적의 외국인 입국도 허용하나 사전 비자 취득 필수(도착비자 발급 불가) ※ 입국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 (단기 방문객) 나미비아 내 목적지까지 자유로운 이동 가능(단,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시점이 72시간 이상인 경우 격리조치 및 진단검사 실시(자부담) 후 음성인 경우 격리 해제) (장기 체류자) 거주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 가능하나 도착 후 진단검사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 지정 시설 또는 자가에서 격리
11	나우루	▶ 모든 여행객은 호주(빅토리아주 제외), 뉴질랜드, 태평양 도서국(파푸아뉴기니 제외 13개국)에서 체류 후 승인을 받아 나우루 입국 가능(20.8.7.) ※ △탑승 전 보건설문지 작성 및 체온 등 확인, △입국여행객 보건신고서 작성, △신체 건강 및 체온 확인, △필요 시 기타 검사 실시 ※ 모든 입국자는 지정 주거시설에서 14일 격리,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12	나이지리아	▶ (입국 전) △반드시 출발시간 기준 96시간 이내 검사 실시(72시간 이내 검사 권장) 후 코로나19 음성 판정 및 나이지리아 질병관리본부 사이트(http://nitp.nodc.gov.ng) 에 결과 입력 필요 (20.9.5.) △상기 사이트상에서 현지 도착 후 7일째 되는 날 PCR 재검사를 위한 온라인 사전 예약 진행 및 자가진단서 작성 ▶ (입국 시) 출발 전 PCR 검사 결과서 및 재검 예약증 제출 ▶ (입국 후) 7일간 자가 격리(보건당국 건강상태 모니터링 예정) 실시 후 예약한 장소에서 PCR 재검 실시하고, 음성 판정 시 도착 후 8일째부터 격리 해제
13	남수단	▶ 탑승 시점 기준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 모든 입국자 대상 14일 격리 의무(14일 자가격리 후 이틀날 지정 이후 자동 해제) ※ 모든 입국자는 온라인을 통해 E-Visa(evisa.gov.ss) 신청 후 소지 의무 ※ 상세 소지 필요 서류 주우간다 대한민국대사관에 문의
14	남아프리카공화국	▶ 출발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20.10.1.) ※ 유증상자 및 접촉자의 경우 10일간 지정시설 격리(자부담) ※ △여행자 보험 가입 필수, △남아공 Covid Alert 앱 설치, △가족원 중 한명이라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족 전체 검사 및 격리(자부담)
15	네팔	▶ 20.12.16.부터 관광 입국비자 발급 재개(20.12.11.) ※ △주한네팔대사관 등을 통해 관광 입국비자 발급 가능, △도착비자의 경우 네팔의 관련 부처가 작성한 사전 승인/추천서 소지 필요 ※ 네팔로 출발하기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5세 미만의 어린이는 제외) ※ 육로 국경을 통한 입출국은 향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금지(네팔 정부의 사전 승인/추천서를 소지한 경우 제외)
16	노르웨이	▶ EU/EEA 국가를 포함하여 원칙적으로 국적 불문, 외국인 입국 금지(21.1.29.) - 단, 장기 거주중이거나 장기체류비자(유학 등) 보유자, 기타 노르웨이 정부가 특별히 허가한 외국인만 입국 가능 ▶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하더라도, 아래 4가지 입국 관련 의무 준수 필요 ① 입국 전 온라인 등록 의무 ② 출발지 출발 시점 기준 24시간 이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③ 입국 시 입경지점에서 코로나19 검사 의무 ※ 입국자 중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브라질 방문자는 PCR 테스트 의무 ④ 입국 후 10일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의무 - (예외) 핀란드 일부지역, 그린란드 발 입국자 - (시설격리) 노르웨이 현지 주소가 없는 외국인은 시설격리(자부담, 일일 미화 약 60불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상당) / 대부분 공항 인근 호텔로 지정
17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19.부터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 임시 비자 소지자(학생, 임시 노동자 등), 여행객 ※ (오클랜드 국제공항 경우) 20.6.19.부터 환승비자 또는 전자여행허가(NZeTA)를 발급받아야 하며, 최대 24시간 이내에 공항에서 경유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 경유지에서 경유 허가(예: 승인(Confirmed) 상태의 환승비자 등)가 사전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뉴질랜드 경유도 불가 ※ 20.4.9.부터 뉴질랜드 모든 입국자는 14일간 시설 격리 ※ 21.1.18.부터 모든 해외입국자(호주·남극태평양도서국 제외)에 대해 뉴질랜드 도착 시 코로나19 PCR 검사 제도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15. 23:59부터 영국 또는 미국에서 출발하여 뉴질랜드 입국 및 경유하는 경우*, 출발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21.1.25. 23:59부터 모든 지역(호주·남극태평양도서국 제외)에서 출발하는 경우로 확대) * △영국 또는 미국에서 출발하는 경우, △영국 또는 미국에서 환승한 경우(환승시간 96시간 이상), △영국 또는 미국에서 출발하여 제3국으로 이동 중에 뉴질랜드에서 환승하고자 하는 경우
18	니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4.1.부터 자국 거주민(12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최근 12개월 이내에 6개월간 거주한 자)을 제외한 모든 외부인의 입국 불허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반드시 14일간 격리 조치 ※ 니우에 정부의 허가를 받은 특정 전문직 종사자 등은 입국 가능
19	니제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을 통한 입국 재개(20.8.1.) ※ 출입국 시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및 유증상 시 신속한 체검사 및 PCR 검사 실시 ※ 14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7일간 자가격리 실시(20.1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락 가능한 장소에서 자가격리 실시 필요, △격리 시작 시 경찰당국이 입국자의 여권을 회수하고 격리 종료 시 반환, △격리 7일 째에 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시 격리 종료 - 단, 출장 등 목적의 13일 이하 단기 체류자의 경우 자가격리 불요하나 방역조치 준수 및 출국 항공권 소지 필요
20	니카라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 20.9.19.부터 국제선 정기 항공편 운항 재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입국자는 니카라과 입국 전 72시간 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사전 제출 및 입국 시 제출 필요(단, 아시아·아프리카·오세아니아 출발 입국자는 96시간 내 시행된 확인서 제출) ※ PCR 음성확인서에 반드시 'RT-PCR' 또는 'Real 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표기 필요 ※ 코로나19 유증상자 입국 불가 ▶ (육로) 북부 온두라스 국경을 통한 출입국 가능(남부 코스타리카 국경은 폐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입국자는 니카라과 입국 전 72시간 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육로 국경 통과 시 제출 필요
21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3.1.부터 대만 내 환승허용 및 △대만거류증 소지 외국인, △관광일반 사회방문 목적 이외의 사유로 재외 타이베이대표부에서 특별입경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 허용 ※ 입국 시(환승 포함) 출발지 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수속 전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오위안공항에서 동일한 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한 환승만 허용, 환승구역에서의 체류시간은 8시간 이내로 제한 - 입국 후 방역호텔·집중검역시설·자가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 21.2.9.부터 교육부 허가 외국인 유학생(특별 입경 허가자)은 자가격리 만료 시점에 코로나19 진단검사 추가 실시, 음성판정을 받은 후 격리해제
22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토) 17:00부터 4.5(월) 까지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2.24 추가 연장) ※ 덴마크 체류허가증 소지 외국인(영주, 학생, 취업 등이 덴마크행 항공기(경유 시 경유지 출발 항공기) 탑승 전 24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입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R 또는 Antigen test(항원검사) 인정, Antibody test(항체검사)는 불인정 - 경유 시 예를 들어 A국가 출발-B국가 경유-덴마크 도착 연결 항공편 탑승 시 A국가에서 항공기 탑승 전 24시간 이내 실시한 음성확인서 인정 - 합당한 요건(덴마크 체류국민의 가족방문 등) 대상자가 합당한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및 덴마크 도착 전 24시간 이내 실시한 음성확인서* 제출시 입국 가능 - 상기 제한적 입국 가능자 대상 입국 후 10일간 의무 격리 실시(2.7-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음성 확인서 제출과 별개로 덴마크 공항 입국심사 전 추가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국심사 시 제출 ※ 격리 4일째 PCR 감염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일 경우 남은 격리 기간 완화 가능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 환승목적으로 덴마크 공항 이용 시 입국 가능,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단, 덴마크 공항 내 환승구역만 이용가능)
23	도미니카공화국	▶ 입국자에 대해 랜덤방식으로 코로나19 신속 검사 실시(검사 결과 양성이거나 유증상 시 지정시설 격리) ※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필수
24	동티모르	▶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0.3.19.) ※ 특별한 경우 총리 허가 시 입국 가능하나, 지정시설에서 14일 격리(20.5.30.) ▶ 20.4.4.부터 향후 안내 시까지 국제선 민간 상업기 운항 중단 ※ 긴급항공편 및 필수 항공편은 예외
25	라오스	▶ 추후 공지 시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20.12.11.) ※ 모든 국경 폐쇄 및 발병국으로부터의 입국(경유 포함)을 위한 비자 발급 중단(주요 사업 관련 전문가, 기술자, 해외노동자 등 일부는 예외적 입국 가능) ※ 외교관의 경우 자택이 아닌 정부 지정 시설 또는 호텔에서 14일간 격리 ※ 긴급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입국을 원하는 경우 입국 전 라오스 코로나19 대책위원회의 사전허가 필수 및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검사 결과서(RT-PCR만 인정) 지참 필요 - 입국 직후 진단검사 실시 및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 ※ 라오스 코로나19 예방통제대책위원회 허가를 받은 단체 관광객 입국 가능 ※ 유효한 비자 소지자의 경우 입국허가 절차를 통해 입국가능(상세내용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26	라이베리아	▶ 모든 입국자는 출발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20.6.27.) ※ 미소지자는 도착 직후 간이 테스트 실시하여 △양성일 경우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시설 격리, △음성일 경우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자가 격리 ※ 체온 측정 및 앱을 통한 전화번호 등록
27	라트비아	▶ 도착 48시간 전 covidpass.lv에서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QR코드 부여)하고, 입국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소지 ※ 21.4.6까지 △EU, EEC 회원국 및 스위스에서 출발하는 비필수 목적 방문자의 입국 제한(학업, 출장, 가족방문 등 허용), △영국, 포르투갈, 아일랜드 출발자 입국 불허 ※ EU 등 거의 모든 국가 출발자 대상 자가격리 10일(한국은 자가격리 면제)
28	러시아	▶ 20.9.27.부터 한국(인천)과 정기항공편 운항을 재개하여 우리 국민의 러시아 입국 허용(단, 제3국을 경유한 입국 및 육로 입국은 불허용) ※ 블라디보스토크행 임시항공편 등의 경우 유효한 비자 소지자에 한해 탑승이 가능하며, 그 경우에도 반드시 항공사와 상담하여 탑승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입국 시 러시아 도착일 기준 72시간 전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영문 또는 노어) 제출 필요 ※ 학생비자 및 노동·상용비자(HQS 포함) 소지자의 경우 14일 격리 ※ 경우에 따라 검역당국으로부터 격리 명령 발부 가능성 있음 ※ 항공운항이 재개된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은 러시아 도착일 기준 3일 전과 러시아 입국 후 72시간 이내에 각각 PCR 검사(총 2회) 실시 필요 - 입국 후 진단검사가 나올 때까지 격리, 음성 확인 후 등교 수업 가능(PCR 음성확인서는 영어 또는 러시아로 제출) ▶ 20.3.30.부터 모든 러시아연방 국경에서 차량, 철도, 도보, 하천 등 이동제한 ※ △영주권자,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하천 선박 승무원 등은 예외
29	레바논	▶ 모든 입국자는 사전에 covid.pcm.gov.lb에서 관련 서식을 전자제출한 후 동 결과를 SMS 또는 메일로 수령하여 탑승 시 항공사 카운터에 제시(12세 미만 승객은 면제) ※ 모든 입국자는 사전에 https://arcg.is/0GaDnG 에서 건강확인서 온라인 제출 및 covidletrack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고 입국 시 공항에서 레바논 보건부 대표에게 제시 ※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72시간 동안 자가격리 - 자가격리 면제 대상 : 외교관 및 가족/공무출장단/UNIFIL 단원, 코로나19 확진 후 완치된 승객(최근 발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및 15일 이상 경과한 PCR 양성확인서 소지), △혈중 항체 농도가 기준 이상으로 나타난 IgG 검사 결과서를 지참한 승객(입국 후 공항 내 의료진의 격리면제 승인 필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동 확인서를 지참한 승객, 레바논 출국 후 1주일 이내 단기체류 후 복귀하는 승객 ※ 베이루트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 대상 입국 즉시 PCR 검사 실시(검사비용은 각 항공사가 항공 요금에 포함하여 징구하며 12세 미만 승객 및 UNIFIL 또는 외교단 소속 승객, 48시간 이내 기간 동안에만 체류하는 승무원은 검사 면제)
30	룩셈부르크	▶ 항공편으로 룩셈부르크에 입국하는 6세 이상 모든 여행자(국적 무관, EU+ 역외/역내국가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p>무관)는 탑승 시 출발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 필요</p> <p>※ EU+ 역외국가에서 항공편으로 룩셈부르크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룩셈부르크 공항 도착 시 신속항원검사 수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검사 거부 시 해당 입국자는 14일 자가격리 <p>※ 상기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및 공항 도착 시 신속항원 검사 수검은 EU+ 역외국가중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 등 룩셈부르크로의 비필수목적 여행이 가능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p> <p>※ 단, 아래 범주에 속하는 여행자들은 상기 의무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송 분야 종사자 및 공항 경유 승객, △룩셈부르크와 EU+ 역내국가간 왕복 항공편을 이용해 72시간 이내에 출입국한 사람(단, 상기 기간 동안 EU+ 역내국가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국제기구의 초대를 받은 사람, 군인, 개발협력 및 인도지원 종사자, 시민보호 분야 종사자의 업무상 이동(단, 룩셈부르크 체류 예정 기간이 72시간을 넘지 않은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고, 해당 국가에서 적용하는 격리 기간이 지났으며, 어떤 감염 증상도 없는 사람은 동 사실을 증명하는 '의료증명서' 를 지참 시, 음성확인서 제출 없이 룩셈부르크행 항공기 탑승 가능
31	르완다	<p>▶ 20.8.1.부터 국제공항 운항 재개(20.7.29.)</p> <p>※ 21.2.8부터 공항을 통한 모든 해외 입국자 대상(만 5세 미만 제외)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전 내에 검사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사전 제출, △도착 72시간 전 내 www.rbc.gov.rw 통해 승객위치확인서(성명, 여권번호, 항공편, 지정호텔 예약정보 등) 기입 및 음성확인서 업로드, △입국 후 검역 시 음성확인서 및 확인번호 제시, △입국 후 공항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진행(검사비 USD 60), △결과 나올 때까지 지정호텔에 24시간 대기, △음성판정 즉시 지정호텔에서 체크아웃 후 7일간 자가격리 진행, △자가격리 종료 전 SMS를 통해 지정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 추가 실시(검사비 무료)</p> <p>※ 키갈리 국제공항 경유자 대상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전 내에 검사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사전 제출, △도착 72시간 전 내 www.rbc.gov.rw 통해 승객위치확인서 기입, △경유시 음성확인서 및 확인번호 제시, △추가 코로나19 검사 미실시</p>
32	리비아	<p>▶ 입국 시점 기준 48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p>
33	리투아니아	<p>▶ (전세계 공통) △입국 48시간 전 코로나19 음성 결과 소지(또는 입국 후 24시간 내 코로나19 검사), △테스트 결과에 상관없이 자가격리 14일 의무, △모든 입국수단(항공, 차량 등) 탑승 전 홈페이지(keleiviams.nvsc.lt/en/form)에 게재된 양식을 작성하고, 확인 QR코드를 받아 탑승 시 제시</p> <p>▶ (25개 검역강화 지역) 강화된 자가격리 시행 (△외부 일체 출입 금지, △가족과 함께 자가격리 금지 등 적용)</p> <p>※ 세부 지역은 리투아니아 외교부 홈페이지(urm.lt/default/en/important-covid19) 참조</p>
34	마다가스카르	<p>▶ 20.3.20.부터 국경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20.3.18.)</p> <p>※ 20.10.1.부로 노시베섬 한정 관광객 입국 가능(출국 목적의 유효한 왕복 항공권 소지 관광객에 한정, 타지역으로 이동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다가스카르 민간항공연합회(ACM)는 21.1.16.부로 한국 포함 일본, 프랑스 미국 등 44개국으로부터 오는 관광객의 경우 노시베섬으로의 입국도 제한된다고 발표 - 단, 마다가스카르 거주증 소지자의 경우 노시베섬을 통해 입국 후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본섬으로 이동 가능
35	마셜제도	<p>▶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0.6.5.)</p>
36	마이크로네시아	<p>▶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자국민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금지(20.5.4.)</p>
37	마카오	<p>▶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0.3.25.)</p> <p>※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입국 허용 신청 가능(단, 입국허용 여부는 마카오 정부가 결정하며 입국이 허용되더라도 기타 방역조치(격리) 준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1일 이상 중국에 머문 경우, △마카오 거주자(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마카오 거주 자격을 습득한 자, △마카오 고등교육기관에 등록된 학생, △중요한 사업, 학술적 목적으로 마카오를 방문해야 하는 자, △취업 등 마카오 비거주 체류 자격을 습득한 자 또는 그의 배우자 및 자녀 - 최근 21일 이상 홍콩, 대만, 여타 국가에 머문 경우, △마카오 공공이익 발전 목적에 부합하는 자, △마카오 내 일일필수품 제공 목적에 부합하는 자 <p>※ 마카오 거주자 및 중국, 홍콩, 대만 주민의 경우 △중국에서 입국 시 7일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중국 내륙에서 21일 연속 체류 후 마카오 입국시 격리면제 시행(21.2.23.)), △최근 21일내 대만에서 입국 시 7일내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및 14일 격리 조치, △최근 21일내 홍콩 또는 여타 국가에서 입국시 24시간 내(홍콩)/72시간 내(여타 국가)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및 21일 격리 조치(단, 중국, 홍콩, 대만 주민의 경우 최근 21일내 여타 국가를 방문한 경우 입국 금</p>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지)(21.1.13.)
38	말라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9.1.부터 제한적으로 국제선 항공노선 운항 재개(20.8.27.) ※ △입국 시 입국일로부터 10일 이내(가능하면 72시간 이내 권장) 발급된 코로나19 음성결과서 지참 필요(미지참 시 입국 거부), △입국 후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유증상 시 진단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 단수비자(도착비자) 발급 재개
39	말레이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18.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별도 공지시까지) ※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자(관련 상세 내용은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가. 이민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입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18. 이후 출국한 △영주권 소지자, △말레이시아 국적자의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 △MM2H 비자 소지자, △외교관 - 취업비자-Caterogy 1-2-3 소지자 및 그들의 부양가족과 외국인 가사보조인, △전문가 방문 비자(Professional Visit Pass) 소지자, △취업비자 및 거주비자-Talent 소지자의 Long Term Social Visit Pass(18세 이상 자녀, 부모 등) 소지자(이민국 ESD 부서의 사전 입국 승인 필요), 치료목적 의료 관광객(한국 포함 6개국)은 관계기관 및 이민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고 입국(출국 후 재입국) 가능 - 학생 비자 소지자 및 그들의 보호자(해당 학교측에서 교육부를 통해 이민국으로부터 사전승인(Travel Authorisation Approval Letter) 레터를 받음) 나. 말레이시아 출국 및 재입국을 위해서는 말레이시아 출국 전에 이민국(DGIM)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출국 및 재입국(재입국은 승인 서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공무·사업·긴급한 사유·치료 목적) ※ 21.12.14.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정부 지정 시설에서 10일간 격리(자부담)(관련 상세 내용은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공항 도착 기준 72시간 이내에 한국에서 코로나19 스왑 테스트 음성 결과를 받은 후, 동 영문 결과지를 공항 보건부에 제출하여 승인되면 입국 시의 코로나19 검사 면제 및 7일간 시설 격리
40	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7.25.부터 항공편을 이용한 출입국 및 경유 허용 ※ (입국 요건) △건강상태신고서 작성, △출발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출발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격리 후 검사 진행 / 음성확인서 미소지 시 공항에서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 혹은 호텔격리(비용 자부담) ※ (출국 요건) △공항 및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출발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체온 38도 이하 및 코로나19 무증상자만 항공기 탑승 가능 ※ (경유 요건) △출발지 보건당국으로부터 출발 전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검사 방식) 제출,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사용, △발열 체크, △숙박 경유 시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위생수칙 준수
41	멕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시 발열체크 및 문진표 작성 ※ 유증상 시 진단검사 실시하고, △경증시 자가격리, △중증시 입원조치 ▶ 21.3.21.까지 멕시코-미국 육로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
42	모로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1.부터 한국 포함 사증면제국가 대상 입국제한 추가 완화(기존 입국 시 필수요건이었던 항체검사 폐지) ※ △우리 기업인/기술자의 경우 ①모로코 기업의 초청장, ②검체 채취 시점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우리 일반 방문객의 경우 ①모로코 내 호텔 예약 확인증, ②검체 채취 시점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1세 미만 어린이는 코로나19 PCR 검사 면제 - 관련 상세사항은 주한모로코대사관에 확인 필요 ※ 영국, 남아공, 덴마크, 호주, 브라질, 아일랜드, 뉴질랜드에서 출발하는 경우입국 금지
43	모리셔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1.부터 자국민, 영주권자, 체류허가증 소지 외국인, 장기 여행자 등 대상으로 제한적 국경 개방 ※ 모든 입국자는 입국 즉시 지정호텔에서 14일간 격리, 격리 7일차-14일차에 PCR 검사 실시 ※ 장기 여행자의 경우 탑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출국 목적의 유효한 왕복 항공권, 14일 의무격리를 위해 지정된 호텔의 숙박이 포함된 여행 패키지 구매 증빙서류 소지 필요
44	모리타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9.10.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 ※ 기존의 입국 요건(비자 발급 등)에 더해 입국 시 △입국 전 5일 이내(공인된 검사소에서 발급받은 시점 기준)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제시(필요시 도착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모리타니아 내 체류장소 확인서(제공 양식 사용) 제출, △체온 측정, △건강자가진단서 제출, ※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영국, 남아공, 브라질 등)에서 출국한 경우 보건당국 지침에 따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p>라 입국장소에서 임시 격리, 방역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주재국 정부 지정 격리 장소로 이동 후 14일간 의무 격리(비용 자부담), 14일 격리 후 PCR 검사 결과 음성 시 귀가, 양서 시 보건당국 조치에 따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 도착 시 유증상(발열)인 경우 현장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실시 ※ 경유승객도 상기와 동일한 지침 적용
45	모잠비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자) △기 발급된 입국 비자 취소, △관광방문비자 발급 재개, △기술 이전, 봉사활동, 프로젝트, 인도주의 목적 등의 경우 모잠비크 정부 승인 시 발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외국인 기술자들 대상 체류기간 기산 잠정 정지 ▶ (검역) △지난 96시간 이내 샘플 채취 및 검사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자가격리 면제(11세 이하 아동의 경우 제출 면제), △음성확인서 미제출 또는 코로나19 양성 반응의심 시 검사 실시 또는 자가시설 격리(20.10.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여행자나 복수 출입국이 필요한 자 대상 코로나19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을 14일로 연장(샘플 채취 기준)(20.10.29.) ▶ 상기 정책 적용 지연 또는 예고 없는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대사관에 사전 확인 요망
46	몰도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8.31.부터 최근 14일 이내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50명 미만 국가(한국 포함)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입국 허용(단, 유증상 시 14일 자가격리 시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50명 이상인 국가 방문 후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금지 대상국 리스트(21.3.1.) https://msmps.gov.md/comunicare/noutati/lista-stator-entru-care-se-impune-regimul-de-autoizolare-la-intrarea-pe-teritoriul-republicii-moldova-incapand-cu-26-februarie-2021/ - 예외(입국 허용) : 몰도바 국민의 부모/자녀/배우자, 몰도바 장기비자/거주허가/근로허가 소지자, 유학생, 교사, 단순 경유자, 몰도바 기업초청장/근로계약을 소지한 몰도바 내 근로예정자, 외교공관 직원 및 그 가족, 정부대표단, 선박/항공/철도 승무원 등 -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47	몰디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7.15.부터 일반 관광객의 입국 허용 및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착비자 발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박 예정인 호텔 및 비행편 등을 몰디브 이민국에 등록 필요, △몰디브로 출발하기 최대 96시간 전 실시한 PCR 검사의 음성확인서 제출, △공항에서 발열체크, △유증상인 경우 PCR 검사(일행 중 한명이라도 증상을 보이면 일행 전원 PCR 검사), △입국자 대상 무작위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 20.12.20.이후 말레섬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 및 취업비자 소지자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시 격리 면제(상기 이외의 경우 10일간 자가격리)
48	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3.31.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및 경유(환승) 금지(20.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외적 입국 허용 대상)△외교단·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몽골인의 직계 가족인 외국인, △운송 분야 종사자, △외교(D)·관용(A) 및 상용(B) 목적으로 몽골에 입국하는 외국인 ※ 외교(D)·관용(A)·상용(B) 목적 단기체류 입국자 포함 입국자 전원 총 10일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시설격리 기간 중 총 2회 PCR 검사 시행 / 시설격리 종료후 4일간 자가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은 외국인 격리시설(지정 호텔)에 10일 시설격리 - 외국인은 몽골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 21.3.31.까지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20.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임시항공편 부정기 운항
49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21.1.26.부터 2세 이상의 모든 미국 입국 항공편 승객(경유 승객 포함) 대상 탑승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 확인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 3일 이내에 진단검사(핵산증폭검사 또는 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를 항공사에 제출(항공사는 탑승 전 모든 승객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확인서에는 검사 대상자 정보, 표본 수집 날짜, 진단검사의 종류가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함 ※ 지난 3개월 이내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한 사람의 경우 양성확인서와 의료진 또는 보건 담당자로부터 발급받은 회복증빙서류 지참 필요 ※ 1대 이상의 경유편을 이용할 경우 첫 탑승 시점을 기준으로 함(경유시간이 24시간 이내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유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미국 입국 시점을 기준으로 3일 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함 ▶ 최근 14일 이내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20.2.2.부터), 이란(20.3.2.부터), 쉐겐 26개국, 영국, 아일랜드, 브라질(21.1.26.부터), 남아공(21.1.30.부터) 방문(환승 포함) 후 입국하는 외국인 대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p>상 입국 제한(음성확인서 지참 시에도 입국 불가) ※ 입국 제한의 예외 대상자 : △영주권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21세 미만 및 미혼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법적 보호자형제자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자녀양자피보호자, △동 바이러스 통제 및 완화 관련 목적으로 미 정부의 초청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 자, △비행기선박의 승무원, △외국 공무원 및 직계가족 자격으로 입국하는 자(A-1, A-2, C-2, C-3 비자 소지자) 등</p> <p>▶ 동일 주 내에서도 카운티, 시 등 지역별로 조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출발 전 확인 필요</p> <p>▶ (워싱턴 DC) 20.11.9.부터 코로나19 고위험지역*(한국 포함)에서의 방문자에 대하여 DC 도착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서 지참 요구(위반 시 민형사처벌 가능) * 7일 평균 10만명당 10명 이상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외국의 경우 美CDC가 지정한 코로나19 여행건강경보 2-4단계 국가 ※ 3일 이상 머무를 경우 3-5일사이에 두 번째 테스트를 받아야하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부활동을 제한적으로 할 것을 요구</p> <p>▶ (뉴욕주) 美CDC가 2단계 이상 국가(한국 포함)로 지정한 국가에서 뉴욕주를 방문하는 경우, 여행자 정보(traveler health form) 작성 및 10일간의 자가격리 의무 부과(위반 시 민사처벌 가능) ※ 20.11.4.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및 추가 검사 실시 후 격리기간 단축 가능 - 뉴욕주 도착 전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구비, 도착일로부터 최소 3일간 자가격리 실시 후 4일째에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격리 해제 가능</p> <p>▶ (뉴햄프셔주) 10일간 의무 자가격리 ※ △7일 의무 자가격리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확인 시, △미국 내 일부 주 및 카운티에서 방문 시, △백신 2차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지난 90일 이내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가 회복 시 자가격리 면제</p> <p>▶ (로드아일랜드주) 해외에서 도착하는 모든 여행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또는 회복증명서)를 소지해야 하고 Travel Screening Form, Certificate of Compliance 작성 및 14일 의무 자가격리 ※ 미국내 여행자에 한해 △도착 전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 결과 시, △미국 내 일부 주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p> <p>▶ (매사추세츠주) 사전 Travel Form 작성 후 10일 의무 자가격리(위반 시 벌금 부과) ※ △도착 전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또는 회복증명서) 소지,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 결과 시, △미국 내 일부 주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p> <p>▶ (메릴랜드주) 20.12.17.부터 메릴랜드주가 최종목적지인 여행자의 경우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결과를 받거나, 진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10일간 자가격리 의무(위반 시 경범죄 및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음) ※ △검사는 도착 72시간 전 또는 도착 즉시 실시 필요, △도착 후 72시간 내 두 번째 진단검사 실시</p> <p>▶ (메인주) 방역준수서약서 제출 및 10일 의무 자가격리 ※ △도착 전 72시간 내 검사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메인주 주민 또는 미국 내 일부 주에서 방문 시 서약서 작성 및 자가격리 면제</p> <p>▶ (버몬트주) 방문객 대상 14일 의무 자가격리 ※ △7일 의무 자가격리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하여 음성확인 시, △미국 내 일부 주 및 카운티에서 방문 시 자가격리 면제</p> <p>▶ (알래스카주) 출발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미소지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비용 \$250) 실시 및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본인 비용으로 자가격리 실시 ※ 알래스카주 도착 전 포털을 통해 여행자신고서 및 자가격리 계획서 제출 필요(입국 후 5-14일 사이에 지정 검사소에서 코로나19 재검사(선택사항) ※ 한국-알래스카주 직항이 없으므로 경유지(미국 내 타주) 입국 시에 필요한 조치 확인 필요</p> <p>▶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 베이지역 외부에서 온 경우 10일간 의무격리(위반 시 벌금형 등 가능), 산타 클라라 카운티 : 카운티 경계에서 150마일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부터 방문 시 10일간 의무격리(위반 시 벌금 부과 가능)</p> <p>▶ (코네티컷주) 20.12.19.부터 미국 내 타지역(인접주 뉴욕,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제외) 및 해외에서 코네티컷주를 방문하는 여행자는 도착 후 10일간 의무 자가격리(위반 시 벌금 부과) ※ 단, 필수 노동자 및 코네티컷주 도착 전 72시간 이내 또는 도착 후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확인 시 자가격리 면제 가능</p> <p>▶ (펜실베이니아주) 주 진입 전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구비 또는 10일간 자가격리 의무(위반 시 벌금 부과)(단, 근로 및 치료 등 의료 목적, 군/법정 명령에 따른 통행자, 단 순 경유통과자 등의 경우 의무 자가격리 면제)</p> <p>▶ (하와이주) 방문자에 대한 10일간 의무격리 조치 실시 ※ 단, 출발 기준 72시간 전 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시 의무격리 면제가 가능한 '여행 전 검사 프로그램(Pre-Travel Test</p>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p>Program)' 시행 중(미국행 항공기 탑승 시의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와는 별개로, 하와이주에서 격리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 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3. 기준 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은 미국 본토, 일본, 캐나다에만 소재(지정 검사기관 목록은 하와이주 관광청 홈페이지(hawaiiourismauthority.org)에서 확인 가능) - 21.2.5.부터 해당 프로그램 한국에 확대 적용(하와이주 지정 검사기관 : 연세대세브란스 병원, 인하대병원, 강북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p>※ 상기 여행 전 검사 프로그램을 통한 의무격리 면제는 오아후섬, 마우이섬, 하와이섬에서만 가능하며, 카우아이섬은 격리면제 제도 잠정 중단</p> <p>▶(괌) 출발지역, 체류기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는 정부 지정 시설에서 14일간 격리</p> <p>※ 시설격리 7일차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자가격리 전환 가능</p> <p>▶(미국령 사모아) 입국한 모든 방문자는 △미국령 사모아를 입국하기 전 하와이에서 14일 체류, △건강검진서 제출, △입국 시 추가적으로 보건 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방문자를 14일간 격리조치(20.3.24.)</p> <p>▶(사이판) 입국 후 5일간 정부시설에서 의무격리(비거주자의 경우 자부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입국 3일 전 북마리아나 정부 홈페이지(www.governor.gov.mp/covid-19/travel)에 접속하여 의무신고서(Mandatory Declaration Form) 작성 ※ 입국 후 14일 간 북마리아나 보건부 모니터링 시스템에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 신고 ※ 입국 당일 및 입국 후 5일째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비거주자의 경우 자부담) ※ 5일차에 지정된 장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하여 음성 시 격리 종료 ※ 필수 인력으로 격리 면제 희망 시 사전 의무신고서 작성 및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사이판 보건부의 승인을 통해 면제 가능 * 코로나19 음성확인서는 여행자 성명, 검사수행기관명, 검체수집일(입국 3-6일 이내), PCR 검사 실시 여부, 검사 결과 필수 포함 - 필수 인력 인정 대상은 미국 국토부 웹사이트(www.cisa.gov/critical-infrastructure-sectors)에서 분야별로 확인 가능하며, 보건부 직원과 이메일(cnmhealthofficial@chcc.gov.mp)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p>▶(푸에르토리코) 모든 내외국민 대상 도착 시 여행신고서와 항공기 도착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 결과확인서, 공항 출구 확인 번호와 QR코드 제출 의무(푸에르토리코 보건부의 포털사이트에 결과서 업로드 시 확인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증상자의 경우 공항에서 손가락에서 채취한 혈액으로 신속 코로나19 검사 실시, 결과와 무관하게 격리(비용 자부담)
50	미얀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선 항공기 이착륙 금지 조치 실시(외국인 입국 금지) ▶외교관, 유엔관계자,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및 ASEAN 회원국 포함 모든 외국인에게 상호협정에 따라 부여된 비자 면제 중단(20.3.29.) ※ 외교관과 유엔관계자는 해당국 소재 미얀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코로나 19 음성확인서(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및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 ※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은 해당국 소재 미얀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교통통신부 가장 최근 지침 및 지시 준수 ▶20.3.25.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비행기 탑승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부과(20.3.24.) ※ 미얀마와 인접 국가*간 육로를 통한 외국인 입국 금지(20.3.19.) * 중국, 태국, 인도, 라오스, 방글라데시 ▶모든 외국인 대상 시설자가격리 28일(21일 시설 격리 후 7일 자가격리)로 확대(20.4.11.) ▶긴급한 공무 또는 타당한 사유로 미얀마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하기 사항 충족 시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 및 격리 완화(20.6.19.) - 미얀마 입국 최소 72시간 전 실시한 코로나19 진단 음성판정서 제출 - 입국 전 자국에서 7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 증명 - 주한미얀마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신청하고, 주미얀마대한민국대사관이 예외적 입국 희망자 리스트 및 사유를 공한으로 송부 - 입국 후 7일간 시설 또는 호텔 격리를 실시한 후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올 경우 추가 자가격리 7일 후 활동 가능
51	민주콩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8.15.부터 국경봉쇄조치 해제 ※ 입출국시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및 모든 승객에 대해 비접촉 체온계로 발열 측정, 검역문진표 작성
52	바누아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0.3.20.) ※ 거주비자(resident visa) 소지 외국인은 예외적 입국 허가가 있을시 입국 가능하며, 지정시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p>설에서 2주 격리 ※ 에어 바누아투 국제선 정기 운항 중단(20.7.14.)</p>
53	바레인	<p>▶ 20.9.4.부터 도착 비자 발급 재개 ※ 단, 다음 해당자 외에는 입국제한 유지 - 바레인 국민, 거주허가증 소지자, 한국 등 도착 비자 발급 대상국 승객, 유효한 eVisa 소지자, 외교관, 군인, 승무원, 공무원, 및 UN관계자(상세 사항 www.evisa.gov.bh) ※ (공항 입국 시) 모든 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실시(음성 결과 판별 시까지 자가격리 실시 및 입국 후 5일째, 10일째에 코로나19 검사 실시) ※ (연륙교 입국 시) 주재국에서 인정한 사우디 의료기관에서 72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p>
54	바베이도스	<p>▶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20.9.24.) ※ 입국 전 바베이도스 정부 홈페이지(www.travelform.gov.bb)에서 입국카드(ED)를 작성하여 코로나19 음성확인서와 함께 이메일(immigration.embarkation@barbados.gov.bb) 제출</p>
55	바하마	<p>▶ 20.11.1.부터 탑승 전 7일 이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및 도착 후 96시간 이내 신속 검사 실시(10세 이하 신속 검사 면제)</p>
56	방글라데시	<p>▶ 외국에서 입국한 승객은 주재국 내 체류지 및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고, 입국 후 2주간 자가격리 필요(입국 시 공항에서 검역직원이 시설격리 또는 자가격리 여부 결정)(20.3.23.) ※ 한국인 포함 모든 외국인에 대해 도착비자 발급 중단(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사전에 비자 취득 필요) - 비자 신청 및 방글라데시 입국 시 출발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영문) 제출 의무(단, 10세 미만 아동은 제출 면제)(20.3.23.) ※ 20.3.23.부터 인도와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11개 출입국관리소를 통한 외국인 입국 무기한 금지</p>
57	베냉	<p>▶ 모든 입국자 대상 의무 코로나19 PCR 검사, △ 입국 즉시 1차 검사(입국시 여권은 베냉 당국에서 보관하며, 양성 판정시 코로나19 완치 이후 여권 회수가능), △입국 14일 이후 2차 검사, △ 출국 72시간 전 3차 검사 ※ 환승·경유 승객 코로나19 검사 면제</p>
58	베네수엘라	<p>▶ 입국 시 72시간 이내에 발급 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 베네수엘라행 항공편(Conviasa, Estelar, Avior, Turpial, Laser) 탑승 24시간 전 항공사 측에 PCR 음성확인서 송부 필요(각 항공사 홈페이지 참조) ※ △사전에 홈페이지(pasedesalud.casalab.com.ve)에서 QR코드 발급, △공항 도착 시 공항에서 유료 PCR 검사(현금 USD 60) 실시 ※ 모든 입국자 대상 의무 샘플 검사(PCR) 실시 및 자택에서 검사 결과 대기</p>
59	베트남	<p>▶ 20.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0.3.21.) ※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중요 대외활동 참석, 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 제외(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 △입국 후 보건 당국에 통보/등록,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베트남 입국 3-7일 전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국 제의료보험 가입 필수, △초청 기관에서 치료비 부담(20.8.3.) ※ 모든 입국자는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격리시설 이동 후 진단검사 실시)</p>
60	벨기에	<p>▶ 21.1.27.-21.4.1. 기간 동안 벨기에/벨기에행 비필수적 여행 금지(필수적 여행 사유 관련 주벨기에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필수목적 여행으로 예외적으로 입국이 가능한 경우 아래 검역조치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벨기에 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색 지역에서 입국시 : 음성확인서 불요, 자가격리 필요, 자가격리 1일차와 7일차에 진단검사 수검 필요 - 한국 등 기타 지역에서 입국 시 : 별도 조치 불요 ○ 벨기에 비거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색 지역에서 입국 시 : 음성확인서 필요, 자가격리 필요, 자가격리 7일차에 진단검사 수검 필요(단, 영국, 남아공, 남미에서 입국 시 자가격리 1일차와 7일차에 진단검사 수검 필요) - 한국 등 기타 지역에서 입국 시 : 별도 조치 불요 <p>* 음성확인서 : 6세 이상 입국자에만 해당하며 출발 72시간 전에 실시한 PCR 검사로, 영어·불어·네덜란드어·독어로 발급 필요, 단 아래 경우는 발급 예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체류 기간 또는 벨기에 체류 예정 기간이 48시간 이내인 사람이 자가 교통수단으로 입국할 때, △항공편을 통한 벨기에 경유(환승 구역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 △운송 분야 종사자/선원/국경이동 노동자/국경이동 학생(의무교육과정을 위한 등학교)/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p>국경 공동양육권 행사를 위한 입국</p> <p>* 자가 격리 : 출발일 기준 최소 7일 필요(단, 영국, 남아공, 남미에서 벨기에로 48시간 이상 체류를 위해 입국 시 10일)</p> <p>- PLF에 출발일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도착일 기준</p> <p>* 진단검사 : 6세 이상 입국자에만 해당하며 적색지역에서 48시간 이상 체류한 경우</p>
61	벨라루스	<p>▶ 벨라루스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기준 7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발급된 코로나 19 PCR 음성확인서(영어 또는 러시아어, 성명 기재 필수) 지참 의무(단, 벨라루스를 24시간 이내 경유하는 경우에는 예외, 경유 항공권 소지 필요)</p> <p>※ 한국 포함 23개국에서 출발 시 자가격리 미실시(관련 상세 내용은 주벨라루스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p> <p>- 상기 23개국 이외의 국가에서 출발하여 입국하는 경우 입국 후 10일간 자가격리 실시(격리기간 중 원격 모니터링 시행)</p> <p>- 그린존(한국 포함 23개국) 국가로부터 출발하였더라도 레드존(상기 23개 국가 이외 국가)을 경유한 경우에는 자가격리 대상(20.12.31.)</p> <p>▶ 육로를 통한 벨라루스 입출국 한시적 제한</p> <p>※ △20.11.1.부터 외국인의 벨라루스 육로 입국 제한, △20.12.21.부터 벨라루스 국민 및 외국인의 육로 출국 제한</p>
62	벨리즈	<p>▶ 20.10.1.부터 항공 운항 재개</p> <p>※ 모든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입국 후 자발적 격리 권고(15일)</p>
63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20.9.12.부터 48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시 입국 허용
64	보츠와나	▶ 세계보건기구(WHO) 지정 고위험국가 출발 외국인 입국 금지(20.3.28)
65	볼리비아	<p>▶ 20.12.25.-21.2.15. 기간 동안 아래 입국절차 적용</p> <p>1. 유럽에서 입국하는 승객의 경우 ①입국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영문) 지참, ②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③볼리비아 내 체류지 확인서 제출(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기술 전문가 등은 ①, ② 면제)</p> <p>- 입국 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 보건·체육부 지침에 따라 격리</p> <p>2. 최근 14일 이내 영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승객</p> <p>① 볼리비아 국민,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1번 규정에 따라 입국</p> <p>② 볼리비아에 거주권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p> <p>3. 유럽 이외 지역에서 출발 시 입국 허용(입국 시 코로나19 PCR-TR 음성확인서(영문) 제출 필요)</p> <p>- △국경 인접국 출발 시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지참, △남미, 중미카리브 국가 출발 시 입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지참, △북미, 아시아, 오세아니아 국가 출발 시 입국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지참</p> <p>※ 20.12.25.-21.2.15.까지 유럽 발 항공기 운항 중단</p>
66	부룬디	<p>▶ 20.8.17.부터 모든 여행객 대상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내 받은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p> <p>※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자부담) 및 지정 호텔에서 7일간 격리(지정 호텔은 입국자가 사전에 직접 예약(www.booking.tourism.gov.bi), 입국 시 예약내역 제시 필요)</p> <p>※ 21.1.11.부터 입국 시 공항에서 1회, 격리호텔에서 1회 코로나19 검사 실시</p> <p>- 만약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가 탑승했던 항공기 승객 전원은 2차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며 동 2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 시 격리 해제 가능(상기 검사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 부담)</p> <p>※ 21.1.11.부터 육로 국경 폐쇄</p>
67	부르키나파소	<p>▶ 항공을 통한 입국 재개(20.8.1.)</p> <p>※ △입국 시 5일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자의 경우 일상활동 가능하며, 입국일로부터 8일째, 14일째 날에 지정 검사소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코로나19 유증상자(체온 38도 이상) 또는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의 경우 입국장에서 코로나19 신속항체검사 및 PCR 검사 실시(비용 자부담)</p> <p>※ 음성확인서 미소지 입국자의 경우 PCR 검사 시행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 지정 시설 격리</p>
68	부탄	▶ 모든 여행객 대상 입국금지(20.3.6.)
69	불가리아	<p>▶ 21.1.29.부터 21.4.30.까지 아래 조치 실시</p> <p>※ 불가리아 입국이 허용되는 자(단, 입국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p> <p>- △불가리아, EU회원국, 쉥겐협약국(산마리노, 안도라, 모나코 및 바티칸 포함) 국적자 및 그 가족, △영국, 호주, 캐나다, 조지아, 일본, 뉴질랜드, 르완다, 대한민국, 태국, 튀니지, 우루과이, UAE, 우크라이나, 북마케도니아, 세르비아, 알바니아, 코소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몬테네그로, 몰도바, 이스라엘, 쿠웨이트, 벨라루스, 터키 국적자, △불가리아, EU회원국, 쉥겐협약국 장기 거주자 및 그 가족</p>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인력, 국제운송인력, 정부대표단, 외교공관원, 국제기구직원, 공무·인도적업무 수행중인 자, 인도적사유로 여행중인 자, 경제·통상·투자대표단, 농업·관광 계절노동자, 국경노동자, 학업상의 사유, 국제스포츠경기 또는 국제문화행사 주최·참여자 ※ 상기 불가리아 입국이 가능한 자는 입국전 최대 72시간 이내 수행된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입국 가능 - 불가리아 영토를 경유하는 자, 국제운송 운전자, 선박·항공기 승무원, 국경노동자는 PCR 음성결과 제출 면제 - 불가리아 국적자, 영주권, 장기거주자격 보유자 및 그 가족이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시행 필요 - 입국 후 24시간 이내 시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
70	브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7.29.부터 비자 소지 등 적법한 입국 요건을 갖춘 외국인의 항공을 통한 입국 허용 ※ 영국아일랜드(20.12.25.부터) 및 남아공(21.1.26.부터)에 거주하거나 최근 14일 이내 동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 20.12.30.부터 국적 불문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내에 실시된 코로나19 검사(RT-PCR) 음성확인서 및 여행자 건강확인서(DSV : 체재기간 동안 브라질 내 위생조치를 준수하겠다는 동의) 제시 필요 - RT-PCR 검사는 출발국가의 보건당국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음성확인서는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영어본 제시 가능(2세 미만 또는 동반자가 있는 12세 미만 아동은 제출 면제) - 브라질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 육상 및 해상(또는 수상)을 통한 입국제한 실시(일부 육로 입국 허용) ※ 육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경국가에 거주하고 본국 귀국을 위한 항공기 탑승 외국인은 연방경찰의 허가 받는 경우 입국 가능(△사전에 항공권 지참, △대사관 혹은 총영사관 공식 요청, △입국 후 해당 공항으로 바로 이동) - 파라과이 접경 도시 일부(포트 두 이과수, 폰타 포라, 문두 노부)에 대해 적법한 입국 요건을 갖춘 외국인의 입국 허용 ※ 수, 해로 : 의료지원의 경우/항공을 통한 본국 귀국 환송의 경우 입국 허용
71	브루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외국인 입국 및 환승금지(20.3.24.) ※ △필수 비즈니스 여행(공무 여행 포함), △학업, △치료, △브루나이 국민거주자의 부모, 배우자, 가까운 가족 등 배려 상황 및 기타 특별한 상황 등에 대해 입국 승인(20.9.15.) - 승인 신청은 브루나이 내 초청자가 Travel Portal 웹사이트에서 여행 8일전 Entry Travel Pass신청 - △브루나이로 출발 전 최소 14일 동안 출발국가에 체류,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발급, △브루나이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2-14일(격리기간은 브루나이 정부의 자체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 의무 자가격리(고위험지역에서 오는 입국자 등은 10일차 및 12일차 추가 진단검사 실시), △브루나이 체류 최초 14일동안 BruHealth 앱을 통해 건강상태 일일보고 등 의무 준수 ※ 육로·해상 국경을 통한 브루나이 입국 제한 연장(21.3.10. 까지) - 경유통과를 사전에 승인 받은 운전자 및 운송업자, 육해상 통근자에 대한 예외적 입국 허용 조치 임시 중단 연장(21.3.10. 까지) ▶ 브루나이-싱가포르 상호 그린레인 실시(20.9.1.) ※ 국적불문, 브루나이와 싱가포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비즈니스 및 공무 목적의 필수 여행이 필요한 자는 사전 승인 신청을 통해 상호 방문 가능 - △출발 전 14일동안 출발국가 체류, △출발 72시간 전 실시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결과 제시, △시간대별 여행일정 제출, △BruHealth 앱 설치, △도착 후 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 대기 동안 격리 등 보건조치 필요
72	사모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20.3.21.) ※ 사모아 내각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국제항공편 중단
73	사우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공지 시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 ※ 유효한 Exit and Re-entry비자, 취업비자 및 방문비자 소지자는 예외적으로 입국 허용(20.9.15.) - 입국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입국 후 PCR 검사를 받고 3일 이내 자가격리 해제 또는 7일간 자가격리 - 관련 내용 주사우디아라비아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단, 아래 20개국에서 출발하거나 동 국가를 경유한 경우 입국 불가(최소 14일을 여타 국가에서 보낸 후 입국 가능) - 해당 국가 : 아르헨티나, UAE, 독일, 미국,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파키스탄, 브라질, 포르투갈, 영국, 터키, 남아공, 스웨덴, 스위스, 프랑스, 레바논, 이집트, 인도, 일본 - 사우디인, 외교관, 보건의료 종사자 및 가족의 경우 동 국가에서 출발하더라도 예외적으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로 입국 가능 ※ 한국에서 사우디로 입국하는 경우 UAE를 경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이번 조치로 UAE를 경유한 입국이 금지되어 여타 국가(예: 카타르)를 경유하는 항공편 이용 필요
74	사이프러스	▶ 각 국가를 Green, Orange, Red, Grey 범주 국가로 구분하여 Green, Orange, Red 범주 국가로부터의 입국 원칙적 허용, Grey 범주 국가의 경우 예외적 입국 허용 ※ 한국은 21.3.1. 기준 Orange 범주 국가로 분류되어 한국에서 출발 시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실시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후 입국 가능 ※ 모든 승객은 출발 전 사이프러스 정부 홈페이지(www.cyprusflightpass.gov.cy)에서 승객위치확인서 등 제출 의무
75	상투메프린시페	▶ 20.7.16.부터 코로나19 대응 3단계 완화 조치 시행하여 상업 항공 운항 재개 허가 및 상투메프린시페 내 섬 지역간 이동(항공 및 선박) 허가 ※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및 제시, 음성인 경우 별도 격리 불요
76	세네갈	▶ 20.7.15.부터 항공편을 이용한 입국 허용 ※ (항공기 탑승조건) - 모든 입국 승객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항공기 탑승 가능(입국 5일 이내 출발국 내 정부 인증기관 혹은 국제 인증 보건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 (공항 입국 조건)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승객은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없는 경우 별도 검사 없이 입국(24시간 내 경유 및 환승 구역 내 체류 조건 충족 필요) - 공항 보건당국이 코로나19 위험 평가(증상 여부, 출발지, 경유자, 경유지 체류 시간 등)를 한 후 검사 여부 결정
77	세르비아	▶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 사업 목적(Business purpose)의 입국자 대상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면제(21.1.20.부터) - 입국 48시간 전까지 세르비아상공회의소에 입국자 정보 제출 필요(입국자 성명, 여권번호, 구체 사업목적, 입국일과 입국지점, 항공편, 세르비아내 체류지 주소 등) -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주재국에서 PCR 테스트 또는 antigen FIA 테스트 결과를 세르비아 상공회의소에 제출 필요
78	세이셸	▶ 21.2.15. 이후 코로나19 저위험국가 이외의 국가(한국 포함)에서 출발 시 아래 입국 제한 조치 실시(입시 조건으로 향후 사전 공지없이 변경 가능) ※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 ①항공편 출발 최대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후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소지, ②음성판정 이후 세이셸 건강여행허가증(Health Travel Authorization) 온라인 신청(seychells.govtas.com), ③입국 후 세이셸 정부가 지정한 숙소에서 숙박 * 1차 접종만 완료한 경우는 접종 완료로 간주하지 않음 ※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 ①항공편 출발 최대 72시간 이내 PCR 검사 실시 후 발급받은 음성확인서 소지, ②음성 판정 이후 세이셸 건강여행허가증(Health Travel Authorization) 온라인 신청(seychells.govtas.com), ③반드시 개인 전용기(private jet)를 이용하여 입국, ④입국 후 세이셸 정부가 지정한 숙소에서 최소 6박 이상 숙박, ⑤입국 후 5일째 PCR 검사 실시하여 음성 판정 후 타 숙소(세이셸 정부 지정)로 변경 가능
79	세인트루시아	▶ 20.7.9.부터 세인트루시아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는 입국일 7일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음성확인진단서를 제출 ※ 세인트루시아 도착 전 정부 홈페이지(www.stlucia.org)상에 있는 여행등록서에 코로나19 음성판정임을 증명하고, 체류할 호텔명 제출 ※ 모든 입국자 대상 공항에서 검역절차를 진행하며, 증상이 있을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호텔 또는 정부시설에서 격리 ※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여행자의 경우 입국 시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하며, 입국수속 후 코로나19 지정 호텔 등에서 체류 - 미소지 입국자는 즉시 격리되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됨(자부담)
80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내에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입국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24시간 격리 조치 실시(미국, 영국, 중국 등 고위험국가로부터의 입국자는 입국 후 5일간 지정호텔에서 격리(자부담)) ※ 입국 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정부 홈페이지(https://stv.servicedx.com/travelform)상에서 입국 서류와 코로나19 질문서 작성, 코로나19 음성확인서와 함께 제출(coronaviruistaskforcesvg@gov.vc)
81	세인트키츠네비스	▶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 홍콩, 싱가포르, 일본,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 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지정시설 격리 ※ 입국자 대상 방문 전 6주간의 방문한 국가, 장소 등을 입국카드에 기재할 것을 요청
82	솔로몬제도	▶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0.3.20.) ※ 6개월 이상 거주했고, 유효한 거주비자가 있는 외국인은 Oversight Committee(OSC)의 재입국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승인시 예외적 입국 가능 / 입국전 21일간 총 3번(21일, 10일, 2일전) 코로나19 음성결과 제출 ※ 지정호텔에서 3주간 격리(비용 자부담) ※ 솔로몬항공 국제선 정기 운항 중단(21.10.30까지)
83	수단	▶국적과 상관없이 6세 이상의 모든 입국자는 수단 입국일 기준 96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를 제시 ※ 입국 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경우 격리 면제 ※ 영국, 네덜란드, 남아공 출발 승객의 경우 입국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시 및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84	수리남	자국민 및 영주권자 제외 모든 여행객 대상 입국금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입국 조치 비정기적으로 변동
85	스리랑카	▶21.1.21.부터 국제공항 입국장 재개방 및 관광객 대상 입국 허용 ※ △입국 전 온라인 비자 신청 및 발급, △최소 한달 이상 유효한 코로나19 보험 가입, △입국 전 호텔 사전 예약, △항공기 탑승 96시간 이내 실시한 PCR 검사 음성결과 등 필수 - 입국하는 관광객 수는 일일 2,500명 이하로 제한 - 최초 14일간은 지정호텔에만 머물러야 하며 보건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고 지정 관광지만 방문 가능(입국 후 14일 이전에도 출국 가능) - 입국 직후, 입국 후 10-14일 후 PCR 검사 실시 ▶관광객이 아닌 사업비자 소지자 등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예외적으로 입국허가를 신청하여 입국 가능(단,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스리랑카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 스리랑카 관계 기관을 통해 예외적 입국허가 신청발급 및 이민국에 비자 신청 필요 ※ △입국 전후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입국 후 지정호텔에서 2주간 격리, △격리 해제 전 PCR 검사 재실시
86	스웨덴	▶EU+ 역외국가 중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을 입국제한 대상 국가에서 제외(21.3.31까지) ※ 21.2.6.-21.3.31. 동안 모든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입국 수속 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입국 최대 48시간 전 실시한 검사) ※ 상기 입국제한 예외 적용 여부는 국적이 아닌 '체류 국가'에 따라 적용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 제시 필요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자료와 스웨덴 도착 시 한국에서 출발하였다는 항공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함(영문 또는 스웨덴어로 번역된 자료 구비를 추천) ※ 21.2.14.까지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발 여행자 입국 제한 -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발 입국 제한의 경우, 근무지 또는 거주지가 스웨덴에 있는 경우, 순록 사육 종사자, 인도적 목적 및 군사협력 목적, 해당국가에 거주하는 부모가 스웨덴 내 거주하는 자녀를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는 한시적으로 입국 허용
87	스위스	▶21.2.8.부터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출발일 전 72시간 이내 발급분, 항공기 탑승 시 제시) ※ 21.2.8.부터 △고위험국지역(한국 미포함)에서 출발한 모든 해외입국자, △그 외 지역에서 출발한 해외입국자 중 항공, 기차, 버스, 선박을 이용한 경우(한국에서 항공편으로 출발한 경우 포함, 개인 차량으로 입국하는 경우 예외) 개인정보를 제출 - 입국 전 swissplf.admin.ch에 접속하여 요청 정보를 기입하고 전송하면 QR코드가 메일로 개별 전송, 입국 시 전송된 QR코드를 휴대폰으로 확인 또는 출력본 제출 ※ 고위험국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은 자가 또는 격리가 가능한 장소(호텔 및 기타 숙박 시설)에서 10일간 격리(자세한 국가/지역은 스위스 연방 보건청 또는 주스위스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비위험국에서 출발하여 고위험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24시간 이내에 공항을 이탈하지 않고 환승 시 격리 면제) ※ 20.12.21.부터 영국, 남아공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
88	스페인	▶20.7.4.부터 한국 포함 EU+ 역외 여행제한 해제국가* 대상 입국 허용 * 한국, 호주, 일본, 뉴질랜드, 르완다, 싱가포르, 대만, 중국(입국 허용 대상국은 매달 업데이트) ※ 상기 국가 거주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스페인 입국 가능하며, 한국인은 단기방문시 무시중 입국(최대 90일)이 가능하나 입국시 3단계 특별 검역절차를 거쳐야 함 ① 도착 전 2일 이내 온라인 특별검역신고서 작성, 도착 시 QR 코드 제시(스페인 보건부의 Spain Travel Health 사이트 또는 모바일앱 SpTH에서 작성), ② 발열 체크, ③ 대면 심사 ※ 상기 국가 외 EU+ 역외국의 경우, EU 거주자, 장기체류비자 또는 학생비자 소지자, 증빙서류를 갖춘 필수 출장인력은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23.부터 코로나19 고위험국가*에서 출발하는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도착 전 72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원본 제출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EU+ 역내 26개국 및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역외 57개국(한국은 미포함)(고위험국은 매 2주마다 업데이트) ▶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20.12.22.부터 영국발 항공여객선편, 21.2.3.부터 브라질 및 남아공발 항공편 입국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 및 남아공발 입국자는 공항에서 신속진단검사 실시, 21.2.22.부터 입국 후 10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 21.1.31.부터 스페인-포르투갈 국경을 통한 육로 입국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국민 및 그 가족, 거주자, 증빙서류를 갖춘 필수 출장인력 등은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
89	슬로바키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2.17. 06:00부터 모든 외국(한국 포함) 방문 후 슬로바키아에 입국하는 자에 대하여 아래 의무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슬로바키아 입국 전 사전등록*(경찰검문 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등록 웹사이트(https://korona.go.sk/en/ehranica) ※ 입국 즉시 자가격리(희망시 시설격리) 실시 및 주의의에 원격 신고 ※ 입국 후 8일 이후에 PCR 진단검사 실시(음성판정 시 격리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유럽국가(EU회원국,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영국)만 방문한 자는 무증상일 경우 14일 후 진단검사 없이도 격리해제 가능 ※ 항공편을 통해 입국하는 자는 슬로바키아 교통부 온라인 승객정보양식 제출 필요(https://www.mindop.sk/covid) ※ 기업인 출장 목적 입국 경우, 슬로바키아 경제부에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음(격리면제 시 72시간 이내 발급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 백신 2차접종 이후 14일이 경과한 자의 경우, 사전등록, 입국 즉시 자가격리 의무는 동일하나, 희망시 입국 즉시 PCR 검사를 실시(자기 부담)하고 음성판정시 즉시 격리해제 가능함(다만, 입국 전 실시한 음성확인서 및 백신접종증명서 소지 필요)
90	시에라리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전)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 실시 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출발지 공항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행허가서류(Traveler's Authorization)*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시에라리온 여행포털(www.travel.gov.sl)에 게시된 Passenger Locator Form, △도착 시 코로나19 검사비용 납부증(상기 사이트를 통해 납부)(20.7.17.) ▶ (입국 후) 코로나19 간이검사 및 PCR 검사 실시, 검사비용 납부증 및 Passenger Locator Form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검사가 △음성일 경우 목적지 이동 허용 및 PCR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자가 대기, △ 양성일 경우 공항 인근 격리호텔에서 PCR검사 결과 확인시까지 격리
91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24.부터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경유 원칙적 금지(국민, 영주권자,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만 입국 가능) 및 예외적 입국 시 14일 시설격리 원칙(단,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는 사전입국 승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24. 23:59부터 모든 싱가포르 입국자(국민 및 영주권자 포함) 대상 도착 직후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 ※ (단기 방문 예외적 허용) 일방적 국경개방국 대상 예외적 입국 허용(싱가포르 도착 후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및 음성 결과 나올 때까지 대기 필요, 관련 상세 절차 사전에 확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방적 국경개방국(단기 방문 허용, 격리 면제) : 브루나이, 뉴질랜드, 호주, 중국 본토, 베트남, 대만 - 신속 통로(필수 목적 공무 및 비즈니스 단기 방문 허용) 잠정 중지 ※ (자택격리 허용) 감염 저위험군 및 중위험군 지역발 입국자 자택격리 허용(그 외 정부 지정시설 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 저위험군(7일간 자택격리) : 마카오 - 감염 중위험군(14일간 자택격리 예외적 가능) : 피지, 스리랑카, 태국, 홍콩, 베트남 ※ (PCR 검사 의무) 싱가포르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는 심으로 출발 72시간 이내 PCR 검사 필요(국적자 및 영주권자는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일방적 국경개방국 및 감염 저위험군발 입국자 제외 - 입국 직후 공항에서 전원 PCR 검사 시행 ※ (해외입국자 검사비 등 자부담) 21.1.1.부로 ①검사비, ②격리비, ③도착 후 14일 이내 확진 시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포함) ※ (한국 관련 특기사항) 20.12.26. 23:59부로 싱가포르 입국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이력(경유 포함)이 있을 시 예외 없이 14일간 정부 지정시설 격리(싱가포르 거주자가 신속통로를 이용하여 한국을 방문 후 싱가포르 복귀하는 경우에도 해당) ※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 관련 조치) 최근 14일 이내 영국 및 남아공을 방문한 모든 장기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p>체류비자 소지자 및 단기 방문객에 대해 각각 20.12.24. 및 21.1.3.부로 싱가포르 입국 및 경유 금지(국적자 및 영주권자는 입국 가능하나 14일 시설격리 후 7일 추가 자기격리)</p> <p>※ (코로나19 보험 가입 필수) 21.1.31. 23:59부로 싱가포르 입국하는 외국인은 코로나19 보험 가입 필수(출입국 심사 시 보험 약관 등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기 방문자는 S\$30,000 이상 청구 가능한 보험, △취업비자 소지자는 S\$10,000 이상 청구 가능한 보험(싱가포르 입국 후 14일 이내 확진 시 대비)
92	아랍에미리트	<p>▶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입국 제한적 허용(20.7.1.)</p> <p>※ (아부다비) UAE 거주비자 소지자는 △재입국용 포털사이트(uaeentry.ica.gov.ae)에서 신분증 번호, 여권번호 등 입력, △항공기 탑승 전 출발 96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자가진단앱(AI Hoshn)을 다운받고 10일 동안 자기격리 실시 등을 요건으로 입국 가능하나, 요건 변경 가능하니 출발 전 확인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부다비 공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은 공항에서 PCR 검사 후 결과 통보 시까지 격리 유지 - 방역조치 완화 국가(한국 미포함)에서 출발한 여행객을 제외한 모든 입국자는 10일간 자기격리 후 아부다비에서 6일 이상 체류할 경우 입국일로부터 6일차에, 12일 이상 체류할 경우 6일차와 12일차에 PCR 검사 실시(방역조치 완화 국가에서 출발한 입국자는 자기격리는 면제되나 검사는 동일하게 실시) <p>※ (두바이) 20.7.7.부터 두바이 국제공항을 통한 외국인 입국 및 경유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상 방문비자 면제 중이나 조치 변동의 가능성이 크므로 출발 전 확인 필요 - 21.1.31.부터 두바이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거주비자 소지자 포함)은 항공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12세 미만 어린이, 중증도 및 심각한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은 PCR 검사 면제) - 아프가니스탄, 브라질, 인도, 이집트 등 지정된 국가(주두바이총영사관 홈페이지 및 에미레이츠 항공 홈페이지 참조, 한국은 포함되지 않음)에서 출발하여 두바이에 도착하는 경우 도착 시 PCR 검사를 추가로 받게 되며(결과 통보 시까지 호텔 또는 자가 등에서 격리), 해당 국가를 출발하여 두바이에서 환승하는 경우에도 출발 기준 72시간 이내의 PCR 음성확인서 필요(기타 환승객은 최종 목적지에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PCR 검사 결과 불필요) - 출국일 기준 14일 이내에 남아공에 체류한 적이 있는 자는 두바이 입국 금지 - △두바이 거주비자 소지자는 입국 전 두바이 이민청의 외국인 거주자 등록 부서(GDRFA)의 사전 승인 필요, △두바이 외 에미리트 거주비자 소지자는 두바이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 아부다비 이민당국(ICA) 승인 필요 - (경유) △수하물이 있는 경우 공항 내 경유 최대 24시간 허용(2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출입국 심사대를 통과 후 수하물을 찾아 재수속 필요), △수하물이 없는 경우 공항 터미널 내 호텔에서 48시간 이상 체류 가능 <p>※ 두바이 공항으로 입국하여 아부다비로 바로 이동하는 여행객은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지참 및 접경지역에서 재검사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포함 그린리스트에 속하지 않는 국가에서 출발한 여행객은 도착 후 10일 간 격리(격리 장소는 지정되어있지 않음) 및 8일째 되는 날 PCR 검사 실시(가능한 한 두바이에서 PCR 검사를 받고 아부다비로 진입 권고) <p>※ 아부다비로 바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 아부다비로 진입하기 위해서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또는 24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DPI(레이저 신속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R 음성확인서로 진입 시 4일째와 8일째 각각 PCR 검사 실시하고, DPI 음성확인서로 진입 시 3일째와 7일째 각각 PCR 검사 실시 - 단,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으로써 Alhosn 앱 상 항체 활성화 아이콘(active icons : letter E or Gold Stars)을 받은 사람은 아부다비 진입 시 모든 규제 면제
93	아르메니아	<p>▶ 모든 입국자는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영어, 러시아어 또는 아르메니아어)를 제출해야 하며, 유효한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자기격리 면제(미소지 시 공항 및 육로 검문소에서 PCR 검사 실시(자부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 격리)</p> <p>※ 아르메니아 국경 검문소 비자발급 중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공관 및 e-visa 시스템을 통해서만 입국비자 발급 가능 <p>※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터키로부터의 육로 입국은 사실상 제한되고 있음</p>
94	아르헨티나	<p>▶ 21.3.12.까지 영주권자 및 입국허가자를 제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1.2.28. 발표)</p> <p>※ 외국인 입국 시 아르헨티나 정부의 예외적 승인 필요</p> <p>※ 아르헨티나 국민, 영주권자 등 해외입국자는 △20.12.16.부터 비행기 탑승 전 72시간 이내에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를 이민청 웹사이트(www.migaciones.gob.ar)에 서약서 제출 시 첨부 및 비행기 탑승 시 제시, △입국 후, PCR 검사 시점부터 10일간 의무 격리 실시(단, 검사일과 무관하게 입국 후 7일은 의무격리)(20.12.24.)</p> <p>※ 입국 시 준수 사항 : △아르헨티나 이민청 웹사이트에 서약서 제출, △코로나19 휴대</p>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폰 어플 'Ciudar' 설치, △비영주 외국인인 아르헨티나 체류기간 중 코로나19 관련 비용(격리, 입원 등)을 제한없이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의무 가입, △코로나19 유증상자의 경우 해당 증상이 코로나19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공식 진단서 미제출 시 아르헨티나행 비행기 탑승 금지 및 아르헨티나 입국 금지
95	아이슬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민, EEA/EFTA 회원국 국민(직계가족 포함) 및 아래 입국 가능 국가 출발 여행객 대상 입국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가능 국가)한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 - 상기 외 유효한 사증 또는 거주허가 소지한 외국인 입국 가능 ※ 예외적으로 입국이 가능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입국 전 온라인 등록 의무(능동감시 앱 설치 권고) ② 입국 후 1차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후 5-6일 시점에 2차 PCR 검사를 실시하여 2차에 걸쳐 음성 확인된 경우 격리 해제(21.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테스트 비용 자부담(1회당 미화 약 100불) - 1차 검사와 2차 검사 사이의 기간(5-6일) 동안은 시설격리(자부담, 일일 미화 약 150불)
96	아이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2.9.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72시간 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 ※ 입국 시 발열체크 및 연락처 제출 실시 중
97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해외 입국자는 아일랜드 입국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검사하여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입국 후 승객위치질문서(COVID-19 Passenger Locator Form)에 기입한 주소에서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국 'Category 2' 국가를 제외한 여타 국가발 입국자는 입국 후 최소 5일 이후 PCR 검사 결과 음성판정 시 자가격리 해제 가능(PCR 음성확인서는 최소 14일간 보관) - 고위험국 'Category 2' 국가 33개국*발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간 승객위치질문서에 기입한 주거시설에서 격리 의무(향후 정부 지정 시설에서 격리 조치 예정) * 입국 5일 이후 GP를 통하여 무료 PCR 검사 시행(필수),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격리 조기해제 불가 * 고위험국 'Category 2' 국가 : 오스트리아, UAE, 남아공 및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남미 국가들이며 변동 가능 ▶ 상기 결정은 북아일랜드를 통해 입국하여 아일랜드로 이동하는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단, 북아일랜드발 아일랜드 입국자는 제외) ▶ 상기 방역조치 위반 해외입국자(입국 직후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자 등)에 대해서는 2,500유로 벌금 혹은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벌금과 징역형 병과 가능 ※ 고위험국 'Category 2' 국가발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 및 제출거부자 등 대상 의무적 시설 격리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진행 중(약 2천유로 비용 자비 부담, 동 조치 위반 시 최소 4천유로의 벌금형 또는 1개월 징역형, 혹은 병과 가능)
98	아제르바이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4.1.까지 국경봉쇄 조치 연장 ※ 단, 거주허가증과 출발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소지한 외국인 대상 입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R 음성확인서는 테스트 결과를 나타내는 QR코드 포함 시에만 인정 - 입국 후 2주간 격리조치(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는 격리 면제) - 국제선은 바쿠-이스탄불 및 모스크바 구간(21.2.18. 재개), 두바이(21.3.2. 재개) 구간 항공편 운항 중
99	알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0.3.17.) ※ 단, 현지 진출 일부 기업 및 외교·공무수행을 위한 입국 시, 대사관을 통해 주재국 관련 부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입국 가능(20.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일간 자가격리 필요(비용 자부담) ※ 모든 해외입국자는 공항 등에서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21.1.24.)
100	앙골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9.9.부터 외국인 체류자(영주권자, 외교관, 투자, 유학, 노동비자 소지자 등) 출입국 허용 (여행·상용 등 단기 방문객 입국 불가) ※ 모든 입국자는 입국 72시간 이내 시행한 코로나19 RT-PCR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및 입국 시 별도로 신속항원진단검사 실시 ※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 후 혈청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격리해제 ※ 20.9.29.부터 모든 입국자는 출발 72시간 전 입국사전신고서를 앙골라 코로나19 범정부 대처위원회 홈페이지(http://covid19.gov.ao)에 등록 필요(RT-PCR 음성확인서 포함)
101	앤티가바부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전 7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시 건강상태 확인서 작성 및 발열 검사
102	에리트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 운항 중단과 국경 봉쇄에 따른 입국 금지(20.3.25.)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103	에스와티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라질 등 고위험 국가군 49개국(한국 제외)* 방문객 대상 입국금지(20.10.1.) *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프랑스, 인도, 이라크, 이스라엘 미국, 영국 등 ※ 입국 시 △출발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RT-PCR 음성확인서 제출, △코로나 유증상자는 검사 실시(자비 부담) 및 지정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20.10.1.)
104	에콰도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13.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입국 전 10일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RT-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입국 지점(공항,항만,육경)에서 별도로 신속항원진단검사 무작위 실시(14세 미만 제외) 및 코로나19 유사증상자(발열, 기침, 몸살, 후각·미각 상실 등)는 전수 신속항원진단검사 실시 - 신속항원진단검사 양성 결과 시 보건부 지정 숙소에서 10일간 격리
105	에티오피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내외국인 대상 입국 전 5일(120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진단검사 명시 필요) 제출 및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단, 10세 미만 어린이와 경유 승객은 코로나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20.10.5.) ※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시 7일, 미소지 시 14일 자가격리 ※ 경유승객은 공항 내 Interline office에서 경유 비자 발급(20미불), 경유 최대 시간은 72시간(72시간 초과하는 경우 출국 시 추가 50미불 지불)
106	엘살바도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및 입국 후 자발적 격리 권고 ※ 외교관, 항공 승무원, 2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 영국, 남아공 출발 여행자 대상 입국 금지
107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 48시간 전 영국 정부 공식사이트를 통해 승객위치확인서 제출 및 출발 전 72시간 이내 검사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위반 시 벌금 부과) ※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10일간 자가격리 의무 부여(21.1.18.부터 한국 등 코로나19 저위험국가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자가격리 면제 제도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일 자가격리 후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격리 해제 가능한 '테스트 투 릴리스' 정책 운영(출발 전 지정된 검사업체에서 검사 예약 필요, 비용 자부담) ※ 최근 10일간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위험국가로 분류된 33개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모든 해외입국자는 지정 호텔에서 10일간 격리 의무(비용 자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국가 33개국) 앙골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보츠와나, 브라질, 브룬디, 카보베르데, 칠레, 콜롬비아, 콩고민주공화국, 에콰도르, 에스타와니, 프랑스령 기아나, 가이아나, 레소토, 말라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포르투갈, 르완다, 세이셸, 남아공, 수리남, 탄자니아, UAE,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짐바브웨 - 단, 한국 출발시에도 스코틀랜드로 입국하는 경우 호텔격리 대상(스코틀랜드 정부는 위험국가 방문과 관계없이 도착 후 10일 동안 지정 호텔에서 격리됨을 별도로 발표) - 변이바이러스 위험국가를 최근 10일 이내 방문하였음에도 승객위치확인서(Passenger Locator Form)에 미작성 및 허위정보 제공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가능 - 위험국가발 입국자는 상기 '테스트 투 릴리스' 이용 불가 ※ 21.2.15.부터 자가/호텔 격리 중 2일째·8일째 추가 PCR 검사 실시(여행 전 온라인으로 사전예약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례 검사를 통해 양성판정을 받을 경우 10일간 추가로 격리조치되며, 변이바이러스 여부 확인검사 실시 - '테스트 투 릴리스' 정책은 유지되나 8일째 검사는 반드시 받아야 함 - △첫 번째 필수 검사를 받지 않을 시 벌금 £1,000, △두 번째 필수 검사를 받지 않을 시 벌금 £2,000 및 격리 기간 14일로 자동 연장, △지정된 호텔에서 격리 하지 않을 시 벌금 £5,000- £10,000 부과
108	오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 전 72시간 이내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최소 30일간 코로나19 치료비가 보장되는 건강보험(여행자 보험) 가입, △입국 직후 PCR 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Tarrasud+ 앱 설치 및 추적팔찌 착용(도착 전 Tarrasud+ 앱을 설치하고 보험증서번호 입력, PCR 검사 및 추적팔찌 비용 선결제) ※ 모든 입국자는 오만 내 호텔 7박 이상 예약 또는 오만 정부가 제공하는 호텔 목록을 활용해 격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선정(비용 자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리의무 위반시 벌금 징수 - 격리 8일차부터 자발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판정 시 격리해제 가능(재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14일 격리) - 격리 중 출국 불가 - 격리기간 만료 후 추적팔찌는 반드시 지정된 병원 등에서 제거 필요(개별 제거 시 벌금) ▶ 한국인의 경우 무비자(도착 비자)로 입국 가능(최대 14일(관광비자) 혹은 30일 체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장 필요시 사전 비자발급 필요 (visa.rop.gov.om) ※ 14일 이상 30일 이하 체류 시 입국심사관에게 체류기간 확인 필요(미확인 시 체류기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p>간 14일 지정, 출국 시 불법체류로 벌금 징수 가능)</p> <p>▶ 21.2.25. 자정부터 15일간 수단, 레바논, 남아공, 나이지리아, 기니, 가나, 시에라리온,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브라질 출발 여행객의 입국 금지</p> <p>※ 오만 입국 14일 내 상기 국가를 방문한 경우에도 입국 금지</p>
109	온두라스	<p>▶ 20.8.17.부터 국제공항 및 육로국경을 통한 외국인의 입국 임시적 허용(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불시에 입국 금지 가능)</p> <p>※ 20.12.23.부터 영국 또는 남아공 출발 외국인 또는 이전 21일 이내 동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온두라스 거주증 소지 외국인은 입국 가능하나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의무)</p> <p>※ 해로를 통한 입국은 금지됨</p> <p>※ 입국 전 이민청의 사전 입국검사 홈페이지(https://prechequeo.inm.gob.hn)를 통해 입국 신청</p> <p>※ 입국 시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검사(PCR 또는 특이도(specificity) 85%-민감도(sensitivity) 98% 이상의 신속검사) 음성결과서 제출(경유 입국자의 경우, 도착 국가가 요구하는 검사 결과서 소지 필수)</p>
110	요르단	<p>▶ 요르단 도착 전 72시간 이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5세 이하 면제)</p> <p>※ 도착 후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실시(5세 이하 면제)</p> <p>- 사전에 진단검사 비용 결제 및 결제 영수증 항공기 체크인 시 제출(암만 퀴알리아국제공항 도착 시 https://registration.questlabjo.com, 아카바 킹후세인국제공항 도착 시 https://covid19.biolab.jo)</p> <p>- 음성판정 시 자가격리 면제</p> <p>※ 입국 후 동선 확인을 위한 모바일 앱 AMAN 다운로드</p> <p>※ 요르단 내에서 코로나19 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자 의료보험 가입 필수</p> <p>※ 14일 이내 영국에 체류했던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p> <p>※ 출발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지참 및 환송시간 10시간 이내인 경우 환송 허용</p>
111	우간다	<p>▶ 모든 입국자는 탑승 시점 기준 120시간 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p> <p>▶ 모든 입국자는 온라인을 통해 비자(visas.immigration.go.ug) 신청 권장</p>
112	우루과이	<p>▶ 추후 공지시까지 모든 외국인 우루과이 입국 금지</p> <p>※ 예외적 입국이 가능한 경우 : 외국인 영주권자, 예외적 입국 허가를 받은 외국인(△항공기 및 선박의 승무원, △외교관, △우루과이 보건당국이 허가한 크루즈선, 선박, 항공기의 승객, △난민, △가족 간 재회의 사유, △연기할 수 없는 업무상, 경제적, 법무상의 사유로 소관 부처를 통해 이민청의 입국 허가를 받은 경우)</p> <p>※ 예외적 입국이 가능한 경우에도 △입국 시 출발 전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RT-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입국 후 자가격리 의무</p> <p>※ 상세한 조건 및 내용은 주우루과이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p>
113	우즈베키스탄	<p>▶ 항공편 방역등급상 적색 국가(한국, 일본 등 56개국)에서 출발하는 승객은 △탑승 전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 영어 또는 노어본) 확인 실시, △거주등록 주소지 혹은 지정 호텔 등에서 2주간 격리 시행(20.12.15.)</p> <p>※ 20.12.25.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 대상으로 입국장에서 신속진단검사 실시(자부담)</p> <p>※ 21.3.1.까지 최근 2주 내 영국, 이탈리아, 독일, 덴마크, 오스트리아, 호주, 네덜란드, 남아공 방문 외국인의 우즈베키스탄 입국 금지</p> <p>- 우즈베키스탄 국적자 및 거주 무국적자의 경우 14일 격리</p>
114	우크라이나	<p>▶ 20.9.28.부터 외국인 입국 허용</p> <p>※ 코로나19 치료비용(격리비용 포함)을 처리할 의료보험 소지 필요</p> <p>※ 최근 14일 이내 우크라이나 정부의 자가격리 시행지침(기준)에 따른 '레드존' 국가를 방문 후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자가격리(또는 시설격리)</p> <p>- 한국은 '그린존' 국가에 해당</p> <p>- 최근 리스트(2021.2.26)</p> <p>https://moz.gov.ua/article/news/informacija-schodo-kilkosti-aktivnih-vipadkiv-covid-19-na-100-tis-naselennja-stanom-na-</p> <p>* 격리면제대상 : 12세미만 아동, 대학 유학생, 입국후 2일내 출국예정 확인문서 소지자, 외교공관 직원/가족, 정부대표단, 선박/항공/철도 승무원, 입국전 48시간 이내에 시행한 코로나 진단(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자(입국 후 시행한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격리 종료)</p> <p>- 자가격리(또는 시설격리) 대상자들은 입국장에서 격리상태 감시를 위한 앱(Diy Vdoma)을 우크라이나 전화번호가 있는 휴대폰에 설치</p> <p>※ 21.1.27.부터 수도 Boryspil 국제공항에서 코로나19 PCR 진단검사 실시</p>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 레드존 국가 방문 후 입국하는 경우 상기 검사 음성판정 시 자가격리 종료
115	이라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 운영 및 상업용 항공 운항 재개(20.7.23.) ※ 모든 입출국자는 탑승일 기준 72시간 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20.8.17.) ※ 입국 후 72시간 내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20.11.2.) ※ 영국, 스위스,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스페인, 조지아, 독일,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인도, 미국, 브라질, 호주, 일본, 남아공, 잠비아로부터의 이라크 입국 금지 - 이라크 국민은 입국 가능하나, 입국 후 14일 시설격리 및 코로나19 음성확인 후 격리 해제 ▶ (쿠르드지방정부) 쿠르드지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항공기 탑승 시 항공사 제출용 PCR 검사 음성확인서(항공사별 PCR 검사 인정 기준 시간은 아래 참조) 필요 및 도착 직후 PCR 검사 수검 필요(비용 자부담, 약 50불) * Qatar항공(48시간이내), Turkish항공(48시간이내), Emirates항공(72시간 이내), 미지참 시 탑승이 거부될 수 있음 ※ 21.1.15. 이후 영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그리스,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스페인, 브라질, 미국, 인도, 남아공, 호주, 네덜란드, 일본, 잠비아 방문 외국인의 쿠르드 입국 금지 ※ 자기격리 확인서에 서명한 쿠르드 입국자는 해당 사항 위반 시 벌금 등 책임 부과
116	이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착 96시간 이내에 발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지정시설에서 14일간 격리(검사 및 격리비용 자부담) ※ 20.8.2.부터 관광비자 및 도착 관광비자 발급 중단(노동, 유학, 종교 등 복수비자 소지자는 해당 없음) ※ 유럽발(직항, 경유 모두) 항공편으로 입국 시, 출발지의 PCR 음성확인서와 별개로 현지 입국 시 PCR 재검사 실시 및 일정기간 자기격리(격리장소 : 입국 시 신고된 주소지, 격리기간 : 재검사 결과에 따라 상이)
117	이스라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공지시까지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 예외적으로 입국 가능한 경우, △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입국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10일 또는 2주간 국가 지정시설 격리
118	이집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9.1.부터 항공, 육로, 선박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카이로행 직항 항공편 출발 시각(경유지인 두바이 또는 아부다비 출발 시각) 기준 96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영문 또는 아랍어) 제출(만 6세 미만 아동은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 면제) ※ PCR 음성확인서는 우리 정부에서 인증한 검진 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검진기관 도장, 검체 채취 방법, 검체 채취 시점, 검사 유형(RT-PCR) 등 반드시 포함 필요(누락 시 이집트행 항공편 탑승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음) ※ 관광전세기 등 직항편을 통해 이집트의 주요 관광지(샤름엘셰이크, 후루가다, 타바, 마르사알람, 마르사마트루)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 관광객중 PCR 음성확인서 미소지자의 경우, 도착 공항에서 PCR 검진 실시(30\$ 자부담) 및 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예약된 숙소에서 대기 ※ 체류기간 동안 유효한 여행자보험 필요. 항공사 조치가 수시 변경되므로 항공사 등을 통해 변경사항 확인 필요
119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10.부터 각 국가를 5등급(A-E등급)으로 나누어 입국 제한 조치 실시(20.12.3.) ※ 한국은 D등급 국가로 입국 사실을 관할지 방역당국에 신고하고 14일간 자기격리 실시(기타 등급별 국가 및 조치 내용은 주이탈리아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21.3.5.까지 이탈리아 입국 전 14일 이내 영국에 체류 또는 영국을 경유한 경우 입국 금지 - 필수적인 사유 및 거주지 등록자는 입국 가능(단,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공항, 항구 등 국경에서 검사 또는 48시간 이내 지역보건소에서 검사) 및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14일간 자기격리의무) ※ 21.3.5.까지 이탈리아 입국 전 14일 이내 브라질에 체류 또는 브라질을 경유한 경우 입국 금지 - 거주지 등록자 및 주재국 보건부 허가자는 입국 가능(단,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공항, 항구 등 국경에서 검사 또는 48시간 이내 지역보건소에서 검사) 및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14일간 자기격리, 자기격리 종료 전 재검사 실시) ※ 21.3.5.까지 이탈리아 입국 전 14일 이내 오스트리아에 체류 또는 오스트리아를 경유(12시간 이상)한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또는 항원검사)제출 의무 -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공항, 항구 등 국경에서 검사 또는 48시간 이내 지역보건소에서 검사) 및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14일간 자기격리, 자기격리 종료 전 코로나19 재검사 실시
120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21.부터 관광 이외 다른 모든 목적의 인도 방문 허용 ※ e-visa, 관광비자, 의료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의 효력정지 해제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해당국 인도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한 이후, 비자를 발급받을 때 필요하며, 인도 입국 심사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참할 필요(20.3.10.) ▶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대상 발열검사를 실시, 증상에 따라 조치(20.5.24.)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14일 격리(시설격리 7일, 자가격리 7일), △국제선 승객은 self-declaration form을 출발 72시간 전에 포털(www.newdelhiairport.in)에 업로드하거나 인도 도착 후 제출, △self-declaration form 제출과 별도로 출발 전 72시간 내 검사한 PCR 음성확인서를 포털에 업로드 하면(도착 후 PCR검사가 가능한 공항의 경우, 도착 후 PCR검사/음성확인도 사전예약 후 가능) 시설격리 면제, 총 14일 자가격리만 실시(자세한 내용 주인도 대사관 홈페이지 출입국 및 체류정보 참조)(20.11.9.) - PCR 음성확인서는 입국 시 입국심사장에서 확인하므로 원본 소지 필요 ※ 영국, 유럽 및 중동발 해외입국자의 경우 도착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비용 자부담)하고 음성인 경우에도 14일 자가격리 실시 - 영국, 브라질, 남아공 출발의 경우 자가격리 중 검사 추가 실시 및 경우환승 시에도 일반 해외입국자와 따로 분류되어 별도 관리되며, 코로나19 음성 확인 후 환승편 탑승 허용(검사 및 결과 확인에 6-8시간이 소요되므로 환승편 시간 고려 필요) ※ (마하리슈트라주) 유럽, 중동, 남아공에서 출발하여 뭄바이 공항 등 마하리슈트라주로 도착하는 모든 승객 대상 14일간 시설격리(20.12.22.) - 무증상자의 경우 시설격리(자부담), 유증상자의 경우 지정 병원에 입원 - 격리 5-7일차에 RT-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판정을 받는 경우 남은 기간을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 (타밀나두주) 영국, 브라질, 남아공, 유럽, 중동 지역을 제외한 해외입국자(한국으로부터의 직접 입국자 해당)는 출발 기준 72시간 내 실시된 RT-PCR 음성확인서를 웹사이트(www.newdelhiairport.in)에 등록해야 하며 입국 시 발열검사등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자가격리 없이 14일간 자체 점검 실시 - 영국, 브라질, 남아공, 유럽, 중동 지역으로부터 또는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두바이 등 경유 입국자에 해당) 상기 음성확인서 등록 등 조치 후 7일간 자가격리 실시(7일 자가격리 종료 후 RT-PCR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7일간 자체 점검 실시)
121	인도네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2.9.부터 추후 공지시까지 외국인의 인도네시아 입국을 금지 ※ 입국 금지의 예외 : ① 법무장관령 26호(21.9.29.) 해당자(VITAS, 방문비자, 외교/관용 비자, APEC 카드 소지자, 외교/관용 체류비자 소지자, KITAS(단기취업비자) / KITAP(장기체류비자)), ② TCA(필수 비즈니스 목적 입국 간소화 제도) 대상자, ③ 중앙행정기관(부, 청) 요청에 의한 특별 허가 소지자 - 21.2.9.부터 출발일 전 72시간 이내 발행한 PCR 음성 결과지 휴대 의무 - 인도네시아 입국 시 RT-PCR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 도착일로부터 5일간 호텔 의무 격리, 나머지 9일 자가격리(TCA 입국자는 상호주의에 의해 격리 면제, 구체적 방안 논의 중) - 5일 격리 후 RT-PCR 재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 다음 여행을 이어갈 수 있음
122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14.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외국인의 신규입국 중지(21.1.13.) ※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진 자의 재입국은 가능 ▶ 21.1.14.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비즈니스 트랙 및 레지던스 트랙의 운용 중지(21.1.13.) ※ 일본에 체류자격을 가진 자가 비즈니스 트랙을 이용하여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입국 후 14일간 자택에서 대기(격리) 필요 ▶ 21.1.9.부터 긴급사태 해제 선언 시까지 모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조치 실시(21.1.8.) ※ 21.1.9.부터 입국 시 공항에서 PCR 검사 실시 ※ 21.1.13.부터 입국 시 출국 전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검사의 '검사증명' 제출 필요(검사증명 양식 및 관련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재입국하는 재류자격 보유자 중 검사증명 제출이 불가능한 자는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 입국 후 3일째 재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확인 후 자택에서 대기(입국 후 14일간) ※ 상세한 내용은 주한일본대사관 및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사증 제한) 21.1.13.부 외국인의 신규 입국 중지 조치에 따라 사증 발급 일시 중지 (한국, 홍콩, 마카오 등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 계속) ▶ (항공기 도착공항) 한국 등에서의 여객기편 도착공항을 나리타국제공항·간사이국제공항·주부(中部)국제공항 등 일부로 한정 ※ 제3국가발 일본 환승 관련,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않고 환승 구역 내에서 환승 가능(기준과 동일)
123	자메이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전 자메이카 보건부 웹사이트(visitjamaica.com)에 접속하여 여행 허가 취득 필요 ※ 코로나19 고위험국(미국, 브라질,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파나마)으로부터 출발하는 외국인 관광객(12세 이상)은 도착 전 10일 이내에 시행된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제출(입국 전 상기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사 결과서 업로드 후 여행 허가 취득) ※ 자메이카 국민 및 상주 외국인, 14일 이상 체류 사업목적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보건검사 및 위험 평가 실시(고위험군 : 코로나19 검사 후 결과에 따라 분리 대응, 저위험군 : 14일간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p>자가격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일 미만 체류 사업목적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입국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숙소 또는 정부 격리시설에서 결과 대기(음성 시 보건 수칙을 준수하며 사업 활동 가능) ※ 관광목적 외국인 방문객의 경우 보건검사 및 위험 평가 실시(고위험군 :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분리 대응, 저위험군 : 도착 후 14일간 지정된 관광 허용 구역만 방문 가능) ※ 20.12.21.부터 21.1.31.까지 영국발 여객기 입국 금지
124	잠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일로부터 2주 이내(가능하면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미지참 시 입국거부) 및 입국일로부터 10일간 자가격리 ※ 유증상시 또는 무작위로 입국자 중 일부 승객을 정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 재실시(비용 자부담) ※ 입국 시 작성한 건강체크리스트 및 제반서류의 정보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부서의 모니터링을 14일간 받음 ※ 단수비자(도착비자) 발급 재개
125	적도기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항공 및 해상노선 조건부 운항 및 입국 허용(20.6.12.) ※ 모든 국제선 승객은 항공기 탑승시점 기준 48시간 이내의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지참 필수 - 공항 도착 시 신속진단키트 항체검사를 실시하여 결과가 음성인 경우 5일간 지정호텔에서 격리하고, 격리기간 중 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판정 시 5일 후 격리해제 ※ 영국발 승객 입국 금지 ※ 국제기구 및 외교공관 관계자는 입국 전 사전에 주재국 외교협력부에 항공편 정보(편명, 출발지 등)를 포함한 소속직원(가족 포함)의 도착 날짜 및 시간 통보
126	조지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2.1.부터 자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선별적으로 허용 ※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해외입국자는 입국 심사 시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총 2회) 증명서 제시 필요(단, 백신접종증명서의 구체적 적용 요건 등과 확인 방식, 허용 백신 종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화 된 바 없음) ※ EU 회원국, 미국, 이스라엘, 스위스, 노르웨이, 영국, 북아일랜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국민은 항공편 입국 가능 - 상기 국가 국민은 조지아 입국 전 72시간 내 발급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셋째날에 PCR 검사 의무적으로 실시 - 단, 입국 14일 이내 영국 및 북아일랜드를 방문한 자는 입국 후 12일간 의무격리 ※ 상기 외 국가 국민은 조지아 입국 14일 전 온라인으로 여행지, 조지아 내 체류 주소, 기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입국허용신청서를 작성 후 정부의 승인 필요 - 입국 후 매 3일마다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시설격리 시 체류비 및 검사비 등 제반 비용은 자부담
127	중국	<p>공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28.(토) 0시부터 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불허 ※ 단, 일부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20.9.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 아울러, 한국인의 경우, 20.8.5.부터 △취업, △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거나 △유효한 거류허가증을 소지한 자는 비자 신청 가능하며, 20.9.28. 0시부터 △취업류(Z), △동반 등 개인사무류(S1), △친지방문류(Q1)의 유효한 거류허가증 소지자는 비자 재신청 없이 입국 가능 ※ 상세 필요 서류 및 절차는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비자 신청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를 통해 가능 ▶ 모든 입국자 대상 핵산 샘플 채취 검사 실시 ※ 중국행 직항 항공편 탑승객(정기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1.부터 탑승 전 48시간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 및 항체검사 각각 1회 실시 필요(PCR 검사 및 항체검사는 1개의 의료기관에서 같이 받거나,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각각 실시 가능) ※ 임시 항공편 및 전세기 탑승객(부정기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1.부터 탑승 전 72시간 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1차 PCR 검사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p>실시 및 탑승 전 36시간 내 2차 PCR 검사 및 항체검사 실시 필요 (PCR 검사는 각기 다른 의료기관에서 실시)</p> <p>*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kr.china-embassy.org/kor)에서 확인 가능하며, 수시로 업데이트 되므로 병원 방문 전 미리 확인 필요</p> <p>※ 건강 QR코드 발급</p> <p>- 20.12.1 이후 중국 입국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PCR 검사 및 항체검사 음성확인서를 주한중국대사관 지정 웹사이트 (https://hrhk.cs.mfa.gov.cn/H5/)에 업로드 해야 하며,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이를 심사 후 입국자에게 발급하는 ‘녹색건강 QR 코드’를 항공 탑승시 제시 필요</p> <p>※ 만 3세(36개월)이하 영유아는 코로나19 검사(PCR 및 항체검사) 면제</p> <p>- 다만, 항공 탑승 시 ‘녹색건강 QR코드’를 제시해야하므로, QR코드 발급을 위해 https://hrhk.cs.mfa.gov.cn/H5/에 접속하여 여권의 사진 및 생년월일 정보가 적혀있는 면을 사진 찍어 업로드 필요</p> <p>※ 20.12.10 이후 해외에서 베이징으로 입국한 모든 인원(격리 해제 인원 포함) 대상 항체 검사 실시 예정</p> <p>※ 해외 입국자 대상 14+7+7 조치 실시 예정(14일 시설격리 + 7일 시설 또는 자가 격리 + 7일 건강 관찰 기간)</p> <p>- 건강관찰 기간에는 출퇴근 등 외출은 가능하나 하루 2차례 거주 위원회에 체온, 건강상태 등 보고 필요</p> <p>※ 1.27.(수) 0시부터 홍콩발 항공편을 통해 베이징시로 입국하는 경우 탑승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p> <p>※ 입국 검역 강화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kr.china-embassy.org/kor)에서 확인 가능</p> <p>▶ 육로 국경 검문소를 통한 제3국 인원의 출입국 금지</p> <p>※ 중국 각 지역 방역 방침은 변동가능성이 있으니 유의 요망</p> <p>- 최근 각 성·시별 방역상황에 따라 격리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바, 해외입국이 아닌 중국 내 지역간 이동시, 해당 지역 격리지침 확인 및 준수 필요</p>
1	간쑤성	<p>▶ 간쑤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추가로 14일간 자가격리 실시(비용 자부담)</p> <p>※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간쑤성에 도착하는 경우, 중국 내 경유지에서 14일간 격리조치를 완료하였더라도 간쑤성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p>
2	광둥성	<p>▶ 광둥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3회 실시 + 7일간 자가격리 및 동 기간 중 1-2회 핵산 검사 실시</p> <p>※ 일부 지역에서는 격리기간 중 추가(1-2회) 핵산검사 실시</p>
3	광시좡족 자치구	<p>▶ 광시좡족자치구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2회 실시 + 7일간 자가 격리 + 7일간 자가 건강관리 관찰(자가격리.자가 건강관찰 기간 중 2회 핵산 검사 실시)</p>
4	구이저우성	<p>▶ 구이저우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최근 14일 내 해외 방문 이력 있는 국내 이동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후 14일간 건강모니터링 실시</p> <p>※ 시설격리 및 건강모니터링 기간 중 핵산검사 5회 실시</p> <p>※ 건강모니터링 기간 1-7일은 원칙상 외출과 가족 이외의 인원 접촉이 불가하며 8-14일에는 필요 시 외출이 가능하나 대중교통 탑승 자제 필요</p>
5	네이멍구 자치구	<p>▶ 네이멍구자치구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 (비용 자부담)</p> <p>※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네이멍구자치구로 이동 가능</p> <p>- 단,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필요, 도착 후 14일간 격리(지정시설 또는 자가) 후 핵산검사 재실시 요망</p>
6	닝샤후이족 자치구	<p>▶ 닝샤후이족자치구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는 21일간 지정시설 격리 + 7일간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p>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p>(모든 비용 자부담)</p> <p>▶ 랴오닝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2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p> <p>※ 지역별로 7-14일간 추가 자가격리</p> <p>- (선양시)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14일 집중격리에 추가하여 7일 집중격리 실시(14일 동안은 핵산검사와 혈청검사 병행, 추가 7일 동안은 핵산검사만 실시)</p> <p>- (다롄시) △(다롄에 직접 도착하는 경우) 14일 집중격리(시 정부 지정호텔) 및 7일 자가격리(단, 1인 1가구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집중격리 계속 시행) 후 7일 지역사회 모니터링, △(타 도시 도착 후 다롄으로 이동하는 경우) 타 도시에서 격리를 마치고 다롄으로 이동하기 전 자발적으로 거주지 지역 커뮤니티 또는 직장에 신고 및 지역 커뮤니티에서 7+7 관리 엄격히 실시, △(다롄을 경유하여 타 도시로 가는 경우) 다롄에서 14일 격리를 마친 후 이동 가능</p>
8	베이징시		<p>▶ 베이징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추가 7일간 자가 또는 시설 건강모니터링 실시(PCR 검사결과 등에 따라 시설 격리도 가능)</p> <p>※ 베이징 입국 시 공항에서 검사 실시 및 △시설 격리 중 3일차7일차14일차, △추가 건강모니터링 7일차에 PCR 검사 실시</p> <p>※ 여타 도시로 중국에 입국한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 후 21일이 지나야 베이징 진입 가능하며 베이징 도착 후 7일간 건강관찰 추가 실시</p> <p>※ 21.1.28-21.3.15. 기간 동안 △중국 내 저위험지역에서 베이징 진입 시 베이징 도착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및 도착 후 14일간 건강관찰(도착 7일째, 14일째 되는 날 핵산검사 실시), △중국 내 중·고위험지역 및 봉쇄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베이징에 진입할 수 없음(필수 사유로 입국 시 방역당국의 승인 및 도착일로부터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p> <p>- 관련 상세 내용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p>
9	산둥성		<p>▶ 칭다오 공항, 옌타이 공항, 지난 공항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와 더불어 7일간 자가격리 추가(21.1.12.)(총 21일간 격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7일간 자가 격리(지정호텔 2-3일 포함))(비용 자부담)</p> <p>※ 단, 칭다오 공항 입국자의 경우 총 28일간 격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7일간 자가격리(지정호텔 2-3일 포함) + 7일간 건강관찰(공공장소 출입금지) 추가(21.1.18.)</p> <p>※ 격리기간, 건강관찰 기간 동안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 증상자는 병원 이송(비용 자부담)</p> <p>※ 입국 후 핵산검사 5회(옌타이는 6회) + 혈청검사 1회 실시</p> <p>※ 목적지가 입경공항 지역 외 다른 지역일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통과 시 해당지역으로 이동 가능(단, 호텔 퇴소 전 3일 전에 이동할 관할지역 사구(社區)에 반드시 신고하여 하며, 관할지로의 이동가능 여부를 받아야 이동 가능)</p> <p>▶ 웨이하이 공항 도착 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와 더불어 2-3일간 집중 관찰 및 10일간 자가격리 추가(21.1.12.)(총 23-24일간 격리 및 관찰 : 14일간 시설격리 + 2-3일 집중 관찰 + 7일간 자가격리)(비용 자부담)</p> <p>※ 핵산5회, 혈청1회, 이동가능, 특이 증상자 병원이송 등은 여타 산둥성 공항과 동일</p>
10	산시성 (陝西省)		<p>▶ 산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중국 내 여타 지역 경유자 포함)는 21일간 지정시설 격리 + 7일간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모든 비용 자부담)</p> <p>※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산시성에 도착하는 경우, 경유지에서 14일간 격리조치를 완료하였다더라도 산시성에서 7일간 시설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p>
11	산시성 (山西省)		<p>▶ 산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p>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p>※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산시 성으로 이동 가능</p> <p>-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p>
12	상하이시		<p>▶ 상하이시 도착시,</p> <p>① 목적지가 상하이시이고, 상하이시에 고정 거주지가 있으며, 자가격리 조건(1인 1가구 또는 1가족 1가구, 혹은 공동 주거인이 함께 자가격리 실행 승낙)에 부합하는 입국자는 본인 신청 시 7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 가능(단, 지정시설 격리 5일째 되는 날 핵산검사 후 검사결과 음성 필요)(비용 자부담)</p> <p>- 자가격리 후 13일차 핵산검사 필요</p> <p>-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상기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입국 시 핵산검사, 13일차 핵산검사 실시)</p> <p>② 최종 목적지가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인 입국자는 3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해당 성 내 지정도시로 이동하여 11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p> <p>-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상하이시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가능</p> <p>- 지정도시로 이동 후 해당 성의 격리정책에 따름</p> <p>③ 최종 목적지가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이외 지역인 해외입국자는 상하이시에서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p>
13	시짱자치구		<p>▶ 시짱자치구 도착 전,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중국 내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후 진입 가능</p> <p>※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p>
14	신장위구르 자치구		<p>▶ 신장위구르자치구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p> <p>※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치고 도착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증명서 제출 요구 및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재 실시</p>
15	쓰촨성		<p>▶ 쓰촨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검사 실시 후 △음성판정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양성판정자 및 기타 특이증상자는 병원 이송(모든 비용 자부담)</p> <p>※ 지정시설 격리 기간 중 최소 핵산검사 3회 + 혈청검사 1회 추가 실시</p> <p>※ 지정시설 격리 후 7일간 자가격리(격리 해제 전 핵산검사 1회 추가 실시) + 7일 건강모니터링 실시</p> <p>※ 목적지가 쓰촨성 외 다른 지역일 경우, 쓰촨성 내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핵산검사 통과시 해당 지역으로 이동 가능</p>
16	원난성		<p>▶ 성내 통일된 방역정책이 부재하며 각 사·주에서 공식 발표 없이 새로운 방역정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방문지 거주단지(社區)에 문의 필요</p> <p>※ (쿤밍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14일간 자가격리 추가 실시(비용 자부담, 총 격리기간 중 핵산검사 3회 실시)</p> <p>-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가 14일 시설격리 종료 후 쿤밍시로 이동한 경우 14일 자가격리 추가 실시</p> <p>※ (리장시) 타지역에서 시설격리 14일을 마친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건강모니터링 및 핵산검사 1회 실시</p> <p>※ (취징시) 타지역에서 시설격리 14일을 마친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거주단지 건강모니터링 및 핵산검사 1회 실시</p> <p>※ (위시시) 타지역에서 시설격리 14일을 마친 해외입국자에 대하여 자가격리 7일 + 핵산검사 1회 실시</p> <p>※ (푸얼시) 해외입국자에 대해서 시설격리 14일 + 자가격리 7일 + 핵산검사 4회 실시</p>
17	장시성		<p>▶ 장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기타지역에서 실시한 지정시설 격리 14일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14일 자가격리 실시</p> <p>※ 자가격리 시 핵산검사 1회 진행(비용 자부담)</p>
18	장쑤성		<p>▶ 장쑤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자부담) 후 추가로 14일간 자가격리(조건에 만족하는 장소를 구하지 못</p>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p>하는 경우 집중격리 실시) 및 핵산검사(3일차 및 14일차에 각각 검사)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가 시설격리 해제 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장쑤성으로 이동한 경우, 추가 자가격리 및 핵산검사(3일차 및 14일차에 각각 검사) 실시 ※ 신속통로 이용 인원에 대한 폐쇄식 관리기간 28일로 연장
19	저장성		<p>▶ 저장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7일간 자가 건강관찰, 7일간 일상 건강관찰 및 핵산검사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목적지가 저장성인 경우, 입국 전 사전 신고 플랫폼(주상하이 총영사관 홈페이지 공지)의 QR코드 참고)을 통해 관련 정보 기입 / 이미 입국한 경우, 거주지 관할사무소 또는 직장에 관련 상황 보고 및 방역 규정 준수
20	지린성		<p>▶ 지린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로 7-14일간 추가 자가격리 ※ (창춘시) △고위험지역 국가 방문자의 경우 14+14 격리 실시(입국지에서 14일 집중격리, 최종 목적지로 이동 후 14일 집중격리 실시), △기타 국가 방문자의 경우 14+7+7 격리 실시(입국지에서 14일 집중격리, 최종 목적지에서 7일 집중격리, 자택에서 단독 격리 7일) ※ 만 65세 이상 노인, 임산부, 영유아, 신체기능 및 지적능력을 상실한 자, 기저질환자 및 자택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는 재학생 등은 자가격리 가능 ※ 3.21부터 국외에서 지린성으로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집중격리 기간 중 숙식비용은 자부담이며, 확진 후 의료비용은 의료보험 미가입자인 경우 환자 개인 부담, 이 외 이동 비용·핵산검사·폐 CT검사 비용은 무료
22	충칭시		<p>▶ 충칭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핵산 검사 진행, △음성일 경우 각 소속 구청에서 호송하여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양성 또는 기타 특이증상이 있을 경우 병원으로 이송(비용 자부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격리 종료 후 7일 자가격리 + 7일 건강모니터링(대중교통 탑승, 모임 참가, 폐쇄된 공공장소 방문 불가) 추가 실시(시설격리 기간 동안 핵산검사 3회 실시, 충칭시로 바로 입국한 경우 자가격리 7일째에 추가 핵산검사 실시) ※ 중국 내 타지역으로 입국한 해외입국자가 14일 시설격리 종료 후 충칭시로 이동한 경우(중국 입국일로부터 28일이 지나지 않은 자에 한함) 핵산검사 음성증명서와 격리해제증명서 제출 및 7일 자가격리 + 7일 건강모니터링 추가 실시(자가격리 1일째, 7일째에 각각 핵산검사 실시) - 관련 증명서 미제출 시 시설격리 14일 실시
23	칭하이성		<p>▶ 칭하이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칭하이성으로 이동 가능(단, 최근 7일 내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 및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요망)
24	텐진시		<p>▶ 텐진시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2회(입국 시 1회, 격리 기간 중 1회) 실시(비용 자부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텐진시로 이동 가능 - 단, 현지 거주위원회 및 호텔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 격리 및 핵산검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거주위원회와 소통 필수
25	푸젠성		<p>▶ 푸젠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 후 추가로 7일간 자가격리(단, 최종 목적지가 다른 성일 경우 7일간 자가격리 불요) 및 핵산검사 3회 실시, 혈청검사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 지역(샤먼시 등)에서는 핵산검사 4회 실시 및 추가 혈청검사(3회) 실시
26	하이난성		<p>▶ 하이난성 도착시, 중국 내 여타 도시로 입국하여 하이난으로 진입하는 모든 내외국민은 여타 도시에서 시설격리를 하고, 격리 해제 후</p>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하이난에서 7일간 격리(시설 또는 자가, 비용 자부담) 및 핵산검사 1회 실시 + 7일간 자가 건강관찰 및 관찰 기간 중 1회 핵산검사 실시																										
		27	허난성	<p>▶ 허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기타지역에서 실시한 지정시설 격리 14일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14일 자가격리 실시</p> <p>※ 자가격리 시 핵산검사 1회 진행(비용 자부담)</p>																										
		28	허베이성	<p>▶ 허베이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비용 자부담)</p> <p>※ 경유지에서 격리를 마친 인원은 중국 국내선을 이용해 목적지인 허베이성으로 이동 가능(단, 허베이성 각 지역 거주위원회 방역 정책에 따라 추가로 지정시설 또는 자가격리, 핵산검사 등 실시 가능)</p>																										
		29	헤이룽장성	<p>▶ 헤이룽장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2회, 혈청항체검사 1회 실시(비용 자부담)</p> <p>※ 지역별로 7-14일간 추가 자가격리</p> <p>※ (하얼빈시) 집중격리 14일 + 자가격리 7일 + 핵산검사 3회 실시(도착 후 즉시, 14일, 21일) + 혈청검사 1회 실시</p> <p>※ 운송수단 승선 검역, 건강신고서 대조 확인, 체온 측정, 역학조사, 샘플 채취, 집중 격리 총 6가지 항목 무조건 실시</p> <p>※ 국외에서 출발하여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도착한 경우도 포함</p> <p>※ 만 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집중격리 실시가 부적절한 자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자가격리 가능</p>																										
		30	후난성	<p>▶ 후난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기타지역에서 실시한 지정시설 격리 14일 증명서와 핵산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14일 자가격리 실시</p> <p>※ 자가격리 시 핵산검사 1회 진행(비용 자부담)</p>																										
		31	후베이성	<p>▶ 후베이성 도착시, 모든 내외국민 해외입국자는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후 14일간 자가격리 실시</p> <p>※ 시설격리 시 핵산검사 2회, 항체검사 2회 진행, 자가격리 시 핵산검사 2회 진행(모든 비용 자부담)</p>																										
128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p>▶ 입국 전 3일(72시간) 이내 시행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p> <p>※ 입국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 체온 검사, 개인소지품 소독, 설문지 작성 등 조치 사항</p>																												
129	지부티	<p>▶ 20.7.17.부터 국경(육해공) 재개방</p> <p>※ 모든 내외국민 입국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비용 자부담)</p>																												
130	짐바브웨	<p>▶ 모든 외국인 대상 △출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음성확인서 미지참 시 입국 불허), △유증상 시 현지에서 진단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및 시설격리, △입국일로부터 7-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p> <p>※ 20.10.1.부터 관광 및 사업 목적 등 기존 단수비자(도착비자) 발급 재개</p>																												
131	차드	<p>▶ 입국 전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21.1.22)</p> <p>※ 출국 시에도 출국 전 3일 이내 시행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p>																												
132	체코	<p>▶ 필수적 목적 외에는 입국이 제한되며,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체코 정부의 위험국 분류에 따른 검역 조건 준수 필요</p> <p>※ 한국 등 7개국은 저위험국(녹색)으로 분류되어 있어, 한국발 입국자의 경우 체코 입국 전 14일 이내 12시간을 초과하여 위험국에 체류하지 않으면, 검역조건 충족 불요</p> <p>- (필수적 목적외 입국 제한) 업무, 사업, (직계)가족 방문, 진료, 주재국의 이동제한 규제조치 상 예외사유만 입국 허용, 입국 목적 증빙 서류 지참 필수</p> <p>- (체코 정부의 위험국 분류에 따른 검역 조건) 위험국 분류 정보는 체코 내무부(www.mvcr.cz)에서 확인 가능</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rowspan="2">입국 사전신고</th> <th colspan="2">진단검사(자부담)</th> <th rowspan="2">자가격리</th> <th rowspan="2">마스크 착용</th> </tr> <tr> <th>입국前</th> <th>입국後</th> </tr> </thead> <tbody> <tr> <td>고위험국 (진한적색)</td> <td>○</td> <td>PCR (입국72시간내)</td> <td>PCR (입국 5일 이후 검사, 보건당국 제출)</td> <td>음성확인서 제출 시 격리 해제 *입국 후 5일간 자가격리 필수</td> <td>입국 후 10일간 FFP2(강력권고) 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td> </tr> <tr> <td>위험국 (적색)</td> <td>○</td> <td>PCR (입국72시간내) 또는</td> <td>PCR (입국 5일내 검사, 보건당국 제출)</td> <td>음성판정확인서 제출시 격리 해제</td> <td rowspan="2">입국 후 10일간 FFP2 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td> </tr> <tr> <td>중위험국 (오렌지색)</td> <td>○</td> <td>항원검사 (입국24시간내)</td> <td>X</td> <td>X</td> </tr> </tbody> </table>				구 분	입국 사전신고	진단검사(자부담)		자가격리	마스크 착용	입국前	입국後	고위험국 (진한적색)	○	PCR (입국72시간내)	PCR (입국 5일 이후 검사, 보건당국 제출)	음성확인서 제출 시 격리 해제 *입국 후 5일간 자가격리 필수	입국 후 10일간 FFP2(강력권고) 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	위험국 (적색)	○	PCR (입국72시간내) 또는	PCR (입국 5일내 검사, 보건당국 제출)	음성판정확인서 제출시 격리 해제	입국 후 10일간 FFP2 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	중위험국 (오렌지색)	○	항원검사 (입국24시간내)	X	X
구 분	입국 사전신고	진단검사(자부담)		자가격리	마스크 착용																									
		입국前	입국後																											
고위험국 (진한적색)	○	PCR (입국72시간내)	PCR (입국 5일 이후 검사, 보건당국 제출)	음성확인서 제출 시 격리 해제 *입국 후 5일간 자가격리 필수	입국 후 10일간 FFP2(강력권고) 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																									
위험국 (적색)	○	PCR (입국72시간내) 또는	PCR (입국 5일내 검사, 보건당국 제출)	음성판정확인서 제출시 격리 해제	입국 후 10일간 FFP2 또는 수술용 마스크 착용																									
중위험국 (오렌지색)	○	항원검사 (입국24시간내)	X	X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저위험국 (녹색)	X	X	X	X	PES상 규제 단계에 따라 착용여부 결정
		※ 국제운송근로자/월경노동자 및 학생, 12시간내 경유 등은 예외 ※ 입국 사전신고는 www.prijezdovformular.cz에서 신고 후 출력하여 소지					
133	칠레	▶ 21.1.7.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탑승 전(칠레 입국 직전 탑승 항공편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검사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영문만 인정) 제출 의무 ※ 칠레 국민 및 거주 외국인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입국은 가능하나 벌금 부과 및 시설격리(외국인의 경우 미제출 시 입국불가) ※ 필수건강상태 확인서 제출(www.c19.cl), 위치추적동의서 제출(칠레에서 준비), 여행자보험 가입(코로나19 관련 최소 3만 미불 보장, 증서는 영문, 스페인어만 인정), 여행자 진술서(Declaracion Jurada) 필요 - 공항 도착 후 음성확인서 제출과 무관하게 무작위로 PCR 검사 실시 - 규정 미준수시 최대 5천만 페소 벌금 부과 ※ 20.12.31.부터 내외국인 구분없이 10일간 의무격리(단, 7일째에 PCR 검사를 받아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 가능) ※ 최근 14일 이내 영국에 체류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칠레 국적자 및 거주 외국인은 입국 후 14일간 의무 격리)(20.12.22.)					
134	카메룬	▶ 추후 공지시까지 모든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20.4.30.) ※ 카메룬 입국 사증 발급 중단(기존 복수비자 소지자 입국 가능) - 카메룬 도착 전 3일 이내 시행한 코로나 19 검사 음성결과 제출 필요 - 야운데두알라 공항 도착 시 코로나19 검사 시행, 양성판정 시 지정 의료시설 격리(검사비용 카메룬 정부 부담, 격리 비용 자부담)					
135	카보베르데	▶ 입국 시 탑승 전 72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20.10.12.)					
136	카자흐스탄	▶ 20.10.6.부터 출발 국가 불문, 출발 전 72시간 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미지참 시 입국 불허) ※ 카자흐스탄 국적자 및 영주권자의 경우 음성확인서 미소지시, 입국 즉시 PCR 검사를 위해 2일간 시설 격리(20.10.27.) ※ 만 5세 이하인 자는 음성확인서 소지 면제(20.10.27.) ※ 제3국 출발 항공편 이용시 입국, 환승 제한 규정 폐지(20.9.18.)					
137	카타르	▶ 20.8.1.부터 코로나19 저위험국가(21.1.13. 기준 한국 포함 18개국)에서 출발하는 거주허가증 소지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용(20.7.21.) ※ 입국 허가 신청 필요(관련 내용은 주카타르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 실시, △자가격리 서약서 작성, △7일간 자가격리 ※ 입국 후 6일 째 되는 날 재검사, △음성인 경우 입국 후 7일차에 격리 해제, △양성인 경우 14일간 추가 격리 실시 ※ 코로나19 저위험국가 외 국가에서 출발하는 거주허가증 소지 외국인의 경우, 입국 허가를 받아 지정된 호텔(사전 예약 필수)에서 7일 격리, 호텔격리 6일차 재검사하여 음성인 경우 추가 7일간 자가격리, 양성인 경우 14일간 추가 격리 - 카타르 내 체류중인 거주자는 국외여행 후 복귀 시 호텔격리 7일 후 격리해제 ※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남아공 출발 여행객의 경우 지정된 격리 호텔 예약증이 없는 경우 카타르행 비행기 탑승 금지 ※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육로 국경(Abu Samra)을 통한 입국 요건 및 절차 발표(21.1.9.) - 여행 전 72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지참 및 입국 후 일주일간 호텔 격리(사전에 패키지 구매 필요)					
138	캄보디아	▶ 20.3.30.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 제한 ※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캄보디아로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해당국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비행기 출발시간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및 5만불 이상 보상 가능한 보험증 제출 - 항공사 기장 및 승무원의 경우 입국제한조치 적용 예외 ※ (입국 절차) 캄보디아 도착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지정호텔 등 격리시설로 이동하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코로나19 진단검사, 격리 및 치료비용 자부담, 이를 위해 프놈펜 공항 도착 시 2,000미불 공항 내 은행 창구에 예치(20.6.15.) - 20.11.18.부터 동승객 확진자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14일간 보건부 지정 호텔에서 격리(20.11.11.)					
139	캐나다	▶ 미국발 필수적 입국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단,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탑승일 이전 14일 이내 미국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체류한 외국인은 항공편 탑승 불가)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1.7.부터 5세 이상 모든 항공편 입국자에 대해 출발 72시간 이내에 시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준수 시 캐나다 검역법 위반으로 최대 6개월 징역 및(and/or) 75만 캐불의 벌금형 - 입국자들은 음성확인서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자가격리(14일)를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며, 입국 전 ArriveCAN 어플 등록 및 연락처·자가격리 계획 제공 필수 ※ 21.2.22.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입국 시 PCR 검사 의무화, 정부 지정 호텔에서 최대 3일간 대기(검사비 등 자부담, 2천캐불 이상으로 예상) 및 자가격리가 끝나기 전 추가 검사 의무화 ※ 외국인의 인도적 목적 방문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공중보건청 입국규제 예외 및 제한격리면제 승인을 받은 자로, △가족의 임종, △위독한 사람의 간병, △치료를 받는 자에 대한 돌봄, △장례식 또는 임종식 참석 등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확대 가족의 비필수적 방문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이민난민시민부 서면 승인을 받은 자로, △1년 이상 동거한 교제 중인자, △성년 자녀, △성년 자녀의 자녀, △형제자매, △조부모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조건을 충족해야 함(14일 이내 단기 방문이면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외국인 학생 및 동반 직계가족 입국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캐나다 여행 및 학업에 필요한 문서를 소지하고,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대비 계획을 승인받은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경우에 한함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대상 비필수적 방문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 무증상자로, △직계가족으로 분류되는 배우자, 사실혼 관계자, 부양자녀 및 그의 부양자녀, (양)부모, 법적 보호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캐나다 입국 후 최소 15일 이상 체류 필요(14일 이내 단기 방문은 필수적 목적 제시 필요) ※ 캐나다에 거주 중인 비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 가족이면서, 가족 재결합을 목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 입국 가능 ※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 시 탑승 불가 ※ 21.3.21.까지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간 비필수적 이동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유학생 비자 소지자 입국 관련, △구체적 예외 해당자, △입국 제한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 △유증상자의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입국 허용 여부 등 상세 내용은 주캐나다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요망
140	케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8.1.부터 국제선 운항 재개(20.7.30.) ※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코로나19 증상(기침, 발열, 호흡기 증상)이 없는 경우 격리 면제(한국 등 주재국이 지정한 국가에서 출발하는 사람에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확인서는 케냐 도착 시간 기준 96시간 이내 검사를 받아 발급받은 영문확인서만 인정(한글 및 번역본 불인정, 검사 시 반드시 여권을 소지하고 영문확인서상에 여권상 이름, 여권번호, 검사받은 날짜 및 시간 반드시 기재) - 케냐 보건부 홈페이지(https://bit.ly/covid19month)에 접속, 인원별로 Travelers Health Surveillance Form을 작성한 후 각자 전송받은 QR코드를 케냐 공항 입국 시 제공(핸드폰 또는 출력물) ※ 통행금지 시간(오후10시~익일 오전 4시) 이후 입국자들은 유효한 항공권(탑승권 등) 지참시 호텔 혹은 거주지까지 이동 가능 ※ 케냐 입국 시 비자 발급은 e-visa만 가능(21.1.1.부터 도착비자 발급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ww.evisa.go.ke를 통해 발급 필요
141	코모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등 이웃국가 대상 항공운항 재개(20.9.7.) ※ 비행기 탑승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수 ※ 모든 입국자는 입국 즉시 지정호텔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대 4일간 격리
142	코스타리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로 출발하는 외국인의 입국 제한적 허용(요트를 이용한 해상 입국도 항공 입국과 동일 조건 하에 허용) ※ △입국 전 코로나19 관련 전자 자가진단서 시스템상 제출(서면제출 불가), △코스타리카 보험공사(INS)에 보험가입 또는 코로나 19에 대한 최소한의 의료비용(임원비) 및 최소 14일간의 숙박비 보전이 가능한 여타 국제보험 가입, △코로나19 증상 미발생 ※ 영주권자 등 각 체류자격별 입국 조건은 주코스타리카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143	코트디부아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항공편 운항 재개 및 입국 허용(20.7.1.) ※ 출입국 및 환승 시 항공여행 증명서 및 5일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검체 채취일 기준) 지참, 입국 시 제시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여행 증명서) 홈페이지(deplacement-aerien.gouv.ci)에 접속하여 인적 사항 및 항공편 정보 입력(입국시 수수료 2,000 FCFA, 출국 시 수수료 5,000 FCFA 지불)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국 시 항공여행증명서 발급 수수료에는 코로나19 검사 비용 포함 - 체온이 38도 이상이거나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승객은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144	콜롬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9.21.부터 국제선 여객기 운항 재개 및 외국인 입국 가능 ※ 21.1.3.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출발 전 96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 의무화 ※ 항공기 탑승 전 24시간 이내에 콜롬비아 이민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작성(출국 시에도 작성 필요) 및 콜롬비아 보건부의 CoronApp 설치 - 입국 조건 충족 시 자가격리 면제 ※ 20.3.17. 이후 파나마, 페루,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브라질 내외국인 출입국 금지 ※ 20.12.21. 이후 입국자 중 입국 전 지난 14일 이내 영국에 체류한 사람은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 - 단, 입국 전 14일 이내 영국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콜롬비아 국적자 또는 합법적인 체류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 불가 ※ 21.1.29.부터 콜롬비아-브라질 간 항공 운항을 30일간 중단하고, 21.1.18.-21.1.28. 기간 중 브라질에서 입국한 사람은 14일간 자가격리
145	콩고공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육해공) 봉쇄에 따라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20.6.6.)
146	쿠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입국자 대상 도착 시 코로나19 PCR 검사 실시(자부담) 및 21.1.10.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대상 △출발 국가의 공인 시설에서 △도착 전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19 PCR 검사의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 21.2.6.부터 입국 후 지정된 숙소에서 5일간 의무 격리(자부담) ※ 쿠바에 5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입국 5일차에 2차 PCR 검사 실시
147	쿠웨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후 공지시까지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 쿠웨이트 국적자와 직계가족, 동반 가사노동자만 입국 가능 ※ 입국 시 준수해야 하는 방역 지침(14일간 격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국 전 Kuwait-Mosafer(온라인 플랫폼) 등록(모든 항공사는 상기 플랫폼 미등록자 대상 탑승 금지 의무) - 탑승 시 PCR 음성확인서(검사일로부터 72시간 이내) 소지 및 무증상(고열, 기침 등) - 입국 후 14일간 의무격리 : 도착 후 7일간 시설격리(지정 호텔) 및 이후 7일간 자가격리 - 입국 후 PCR 검사 2회 실시 : 쿠웨이트공항 도착 즉시 1차 검사, 시설격리 6일차에 2차 검사 실시(검사 비용은 입국자 부담) - 시설격리 종료 시 자가격리 앱(shelonek) 설치 및 작동 ※ 외교관과 가족 및 동반 가사노동자, 쿠웨이트 국적 환자 및 동반자, 쿠웨이트 국적 해외유학생, 의료진과 동반가족, 18세 이하 미성년 단독 여행객은 시설격리 없이 14일간 자가격리 및 PCR 검사 2회 실시(쿠웨이트공항 도착 즉시 1차 검사, 자가격리 6일차에 2차 검사)
148	룩셈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0.3.24.) ※ 자국 거주민, 영주권자, 워킹비자 소지자에 한하여 외교이민부 승인하에 입국가능(20.10.30)
149	키르기스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5.부터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미소지 또는 발열 등 증상 있을 경우 입국 불허)
150	키리바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20.부터 추후 공지 시까지 국경봉쇄
151	타지키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지키스탄 정부 발행 입국허가서*, 비자 및 코로나19 음성확인서(입국 72시간 이전 발급) 소지자 대상 입국 허용 * 두바이를 경유하여 입국할 경우에는 입국허가서 불요
152	탄자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8.5.부터 모든 여행객(복귀 거주자 포함)은 소속 국가 또는 이용 항공사가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는 것을 여행조건으로 요구하는 경우, 탄자니아 도착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시 의무
153	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대상 제한적 입국 허용 ※ (20.12.17. 기준 입국 가능한 경우) △태국 총리의 초청 및 허가를 받은 자, △외교단, 국제기구, 정부 대표단, △필수 물품 운송자(임무 완수 후 즉시 출국), △태국인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 △태국 영주권자, △워킹퍼밋 또는 노동허가서 소지자, △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의 학생, 학부모, △코로나19를 제외한 의료 목적 방문, △장기 거주 비자 취득 희망 외국인, △Thailand Elite Card/Thailand Privilege Card 소지 외국인, △APEC Card 소지 한국인, △태국 투자 또는 사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영화 또는 방송 촬영을 희망하는 외국인, △무사증제도 이용 외국인, △Tourist Visa(60일 체류 가능) 취득 희망 외국인, △Special Tourist Visa(90일 체류 가능) 취득 희망 외국인, △은퇴 후 정부 연금을 받고 있는 외국인, △운동 선수 ※ (태국 입국 전) △출국 14일 이전 위험지역 방문 및 모임 자제, △주재국 발행 입국허가증(COE), △비행적합 건강증명서(Fit-to-Fly Health Certificate), △입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 방식), △10만불 이상의 치료비(코로나19 치료 포함) 보장 보험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p>가입증명서, △정부지정격리장소 예약 서류, △출발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p> <p>※ (태국 입국 후) △입국 시 호흡기 증상 및 발열검사, △필수지참서류 제출, △모니터링 시스템/어플리케이션 설치, △정부 지정 호텔(ASQ)에서 최소 14일간 격리(자부담) 및 관련 규정 준수, △RT-PCR 방식의 코로나 검사</p>
154	터키	<p>▶ 20.12.28.부터 터키 입국 시 출발 국가와 무관하게 항공편 탑승시점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 의무(6세 미만 아동 제외)</p> <p>※ 육로/해상 입국의 경우 20.12.30.부터 실시</p> <p>※ 경유 승객의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미적용(단, 항공사에 사전 확인 필요)</p> <p>※ 영국-덴마크발 입국자는 입국자의 거주지에서, 브라질-남아공발 입국자는 정부 지정장소에서 격리 실시</p> <p>※ 영국, 덴마크, 브라질, 남아공 방문 후 10일 내 제3국을 경유하여 터키에 입국한 모든 승객은 격리 10일차에 PCR 검사 시행 후 음성인 경우 격리 해제</p>
155	토고	<p>▶ 모든 입국자에 대해 7일 이내 검사받은 COVID-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온라인 입국신고서에 별도 첨부)</p> <p>※ 입국 24시간 이전에 온라인 입국신고서(https://voyage.gouv.tg/checkphone) 작성(로메공 항 입국시 실시할 의무 COVID-19 PCR 검사 신청, 비용 선지급 및 영수증 필수 지참) 완료 필요</p> <p>※ 입국 이후 공항에서 COVID-19 PCR 검사 의무 실시, TOGO SAFE 모바일 앱을 설치(30일간)하고 숙소로 이동하여 검사 결과(24시간 이내 email 또는 문자메시지로 송부)가 나올 때 까지 자가격리 실시</p> <p>▶ 선박 선원에 대한 조치사항 (입국) 입국전 5일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 △입국 72시간 이내 온라인(http://www.voyage.gouv.tg)에서 검사예약 및 비용결제, △토고정부 지정 선박 agent를 통하여 검사소로 이동, △코로나 검사 실시, 음성일 경우 입국 허용 (출국) 출국전 5일 이내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소지</p>
156	통가	<p>▶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20.3.20.)</p> <p>※ 자국민, 영주권자 및 직계가족 제외</p>
157	투르크메니스탄	<p>▶ 외교단 및 공무 목적(기업인 등) 입국자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항체증명서 제출 요구 및 투르크메니스탄 별도 시설에서 격리 조치</p> <p>※ 백신 접종 증명서 제출 시 7일간 자택격리 가능</p>
158	투발루	<p>▶ 추후 공지 시까지 국경봉쇄</p> <p>※ 예외적인 조건(의약품, 인도주의 등)으로 입국 시 14일간 의무격리</p>
159	튀니지	<p>▶ 모든 입국자는 △입국 시 탑승 72시간 내 발급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및 지정시설(호텔) 예약증 지참 필요, △입국 후 7일간 격리 후 PCR 검사를 실시하고 음성확인 시 격리 해제(모든 비용 자부담)</p> <p>※ 격리 시설로 지정된 호텔 리스트 및 격리 예외 신청 방법은 튀니지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p> <p>- 필수적 공무비즈니스 출장 등의 경우 해당 증빙 자료를 confinement@ms.tn으로 송부 신청(단, 회신 및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 점 유의)</p> <p>※ 입국 전 입국자 관리 사이트(http://app.e7mi.tn)에서 인적사항 등 작성, 출력한 결과 문서(서명 포함) 지참</p>
160	트리니다드토바고	<p>▶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0.3.23.)</p> <p>※ 추후 공지시까지 공항 및 항구 폐쇄(20.5.9.)</p>
161	파나마	<p>▶ 20.10.12.부터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 해제 및 국제항공노선 운항 재개</p> <p>※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또는 항체검사) 제출 시 자가격리 면제</p> <p>-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입국 전 신속진단검사를 시행(\$50 USD 자가 부담), △음성 판정일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불요, △양성 판정일 경우 지정시설 내 14일간 자가격리</p> <p>- 격리 중 7일차에 코로나19 검사를 재실시하여 음성일 경우 격리 종료</p> <p>※ 최근 20일 이내 영국 및 남아공을 방문경유한 경우 입국 금지(20.12.21.)</p> <p>- 파나마 국적자 또는 거주증 소지 외국인의 경우 PCR 또는 신속진단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보건당국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별도 지정 시설에서 격리</p>
162	파라과이	<p>▶ 20.10.21.부터 공항을 통한 입국 제한적 허용(20.10.15.부터 브라질 국경 도시 3개에 한하여 육로를 통한 상업·관광 목적 일시 입국 허용)</p> <p>※ 파라과이-브라질 육로국경(우정의 다리) 개방</p> <p>- △24시간 개방, △차량 및 도보를 통한 입국 허용, △입국 지점부터 30km 이상 이동 시 자가건강신고서(자가격리 주소 기재 필수) 제출</p> <p>※ 입국 전 24시간 내 자가건강신고서 제출(www.visalud.gov.py/dvcf) 및 탑승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RT-PCR/LAMP/NATT 형식 검사) 제출(10세 미만 제외)</p>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확인서 제출 시 자가격리 불요 ※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국제의료보험 가입(부모 중 한명이 파라과이 국민이거나 18세 미만인 경우 제외) ※ 파라과이 입국 전 14일-90일 내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경우 이에 따른 완치판정서(RT-PCR/LAMP/NAAT 형식 검사) 제출(이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및 자가격리 불요) ※ 내국인 및 영주권자의 경우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없이 입국 가능 하나 입국 후 24시간 내 검사 실시 후 결과 제출 필요(결과 미제출 시 벌금 부과) ※ 음성확인서 제출 일시적 면제 요건(단, 입국 24시간 내 PCR 검사 실시 후 결과 제출 필요) - △인도적 사유(주재국 국방위를 통해 사전 승인 필요), △가족 중 파라과이 국적자가 있는 경우, △외교관 및 그 가족 - 입국 24시간 내 실시한 검사가 양성인 경우 자택, 보건호텔, 임시보호시설에서 10일간 자가격리
163	파키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5.부터 한국 포함 카테고리A에 속한 국가발 입국자의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면제 ※ 20.10.5.부터 모든 입국자 대상 자가격리 의무 해제(20.10.2.) - 단 입국 시 코로나 관련 증상이 발견되어 검사를 통해 확진판정을 받거나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 시 자가 격리 요구 가능 ※ 모든 입국자들은 파키스탄 도착 전 Pass Track 앱을 설치하고 개인정보 입력
164	파푸아뉴기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0.3.22.) ※ 예외적으로 통제관의 사전 승인자에 한해 입국가능(20.6.17.) ※ 파푸아뉴기니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모든 승객은 7일 이내 코로나19 음성결과(PCR) 필요(20.7.20) /출발 24시간 이전 e-Health Form 제출 및 바코드 소지 ※ 모든 입국자 대상 지정호텔에서 14일간 격리(비용 자부담) / 통제관 승인자에 한해 자가격리 가능 ※ 격리기간 추적조사를 위한 비용 자부담(휴대폰 애플리케이션 1일 40키나, 전자발찌 100키나)
165	팔레스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등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20.2.26.)
166	페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증 또는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 소지자 대상 입국 허용(사전에 주한 페루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및 수령 필요) ※ △페루 입국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또는 항원검사(antigeno)) 지참, △여행자 건강상태확인서 및 자가격리 관련 서약서 작성(페루 이민청 온라인 제출), △페루 출입국 시 여행 출발 48시간 이내에 페루 이민청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출입국 사전등록' 실시 ※ 21.1.4.부터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격리(입국 후 격리 6일 차에 PCR 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일 경우 격리 해제) ※ 21.2.28.까지 유럽·남아공·브라질에서 출발(경유)하는 비거주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167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3.2.-3.16.간 출발지에 따라 아래 조치 적용(관련 상세 내용은 주포르투갈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모든 승객은 portugalcleanandsafe.pt/en/passenger-locator-card에서 입국 24시간 전까지 승객위치확인서 작성 및 제출 의무 ※ <EU+ 역외 안전국가지역(한국 포함)*>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통해 입국 시 관광 등 비필수적 목적 입국 가능 :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2세 미만 아동은 제출 면제) * 한국, 중국, 태국,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르완다 및 홍콩, 마카오 ※ <EU+ 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통해 입국 시 최근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수 기준에 따른 차등적 제한조치 적용(필수목적의 경우에만 여행할 것을 권고, 2세 미만 아동은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 최근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수 150 이상 500명 미만 국가(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페인*, 프랑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스웨덴 등 16개국) :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 * 21.1.31부터 포르투갈-스페인간 국경이동 금지(육로, 철로, 해로)(단, 화물운송, 국경이동이 필요한 출퇴근자, 응급차량, 포르투갈 거주자의 입국 및 해외거주자의 출국, 인도적 사유로 인한 이동은 예외적 허용) - 최근 14일간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수 500명 이상(체코,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p>토니아, 라트비아 등 5개국) :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 및 입국 후 자택 또는 보건당국 지정시설에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단, 필수적 목적 방문 및 포르투갈 내 체류기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가격리 의무 예외(귀국항공권 제시 필요))</p> <p>※ <EU+ 및 상기 안전국가지역 이외 제3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이용 시 비즈니스(출장), 유학, 가족방문, 의료, 인도적 사유 등 필수적 목적에 한해서만 입국 허용(관광 등 비필수적 목적 입국 불허) : 입국 시 항공기 탑승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 필요</p> <p>- 영국(21.1.23.부터) 및 브라질(21.1.29.부터)과의 항공기 운항 중단(자국민 귀국 등 인도적 목적의 비정기 특별편만 허용)</p>
168	폴란드	<p>▶ 2021.3.14.까지 입국 시 자가격리 10일 의무(우리 국민의 무비자 입국은 유지)</p> <p>※ 입국전 48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폴란드어 또는 영어)를 소지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면제(1.23부터 적용)</p>
169	프랑스	<p>▶ EU 회원국, 쉥겐국가에서 출발하는 우리 국민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며, △탑승 전 72시간 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및 △서약서* 제시 필요</p> <p>* △코로나19 증상이 없고, △여행 14일 이내 코로나19 환자와 접촉 사실이 없고, △프랑스 입국 후 7일간 자가격리를 준수하고 격리 장소 주소를 제공할 것 이며, △7일 경과 후 PCR 검사를 재실시할 것을 서약</p> <p>▶ EU 회원국, 쉥겐국가 이외에서 출발하는 우리 국민의 경우 프랑스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아래 불가피한 사유 만족 필요</p> <p>※ △제3국(한국 포함) 국적자로 유효한 프랑스 또는 유럽 체류증 및 장기체류비자(VLS) 소지자로 프랑스 내 거주지가 있거나 프랑스를 경유하여 유럽연합 내 국가 거주지로 이동하는 경우(프랑스 출국이 21.1.31. 이전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한 경우), △가족합류 또는 난민/무국적자 가족통합자격으로 장기체류비자를 발급받은 제3국 국적자(한국 포함), △고등교육기관(대학교) 2학기를 위해 반드시 프랑스에 정착하려는 학생, 연구소에서 초청받아 반드시 연구소에서 연구가 필요한 연구원 등</p> <p>- 자세한 내용은 주프랑스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p> <p>※ 단순 경유의 경우 24시간 이내 입국 없이 경유구역(Zone Internationale)에만 머무는 경우 가능하나, 경유 시에도 탑승 전 72시간 내 시행된 PCR 음성확인서 및 국제이동확인서 지참 필수</p> <p>※ △탑승 전 72시간 내 시행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및 △서약서(내용 상기 서약서와 동일) 제시 필요</p> <p>※ 영국에서 출발하는 경우 △공무 수행중인 영국 국적 공무원, 국경경찰, 세관직원, △영 불 해저터널 직원, △국경지대 거주 노동자만 프랑스 입국 가능</p>
170	피지	<p>▶ 외국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국 불가하나, 피지 총리실로부터 특별입국허가를 받는 경우 입국 가능(borderrequest@immi.gov.fj)</p> <p>※ 모든 외국인은 입국 시 출발 72시간 내 실시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및 입국 후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자부담)</p> <p>- 지정시설이 아닌 정부 관리 격리시설(호텔, 리조트 등)에서 격리 가능(자부담, crmt@tovnet.gov.fj)</p> <p>- 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진단검사 2회 실시(자부담)</p>
171	핀란드	<p>▶ 21.1.27.-21.3.18. 기간 동안 역외 국가 중 한국 포함 7개국(바티칸, 호주, 르완다, 싱가포르, 태국, 뉴질랜드)의 거주자의 경우 직항편으로 입국하는 경우 입국 목적에 관계없이 입국 가능</p> <p>※ 단, 핀란드 입국을 위해서는 경로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음성 결과 필요(세부 지침은 핀에어 등 각 항공사마다 다르므로 출발 전 확인 필요)</p>
172	필리핀	<p>▶ 21.2.1.부터 특정 비자 소지 외국인 대상 입국 허용 및 지정시설 격리</p> <p>※ 외교비자(9E) 소지자, 이민비자(영주권 등) 소지자,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 승무원 입국 허용</p> <p>※ 외국인 투자자 등에게 발급된 아래 비자 소지자에 대하여 입국 허용</p> <p>- 무역비자(9D) 비자, EO226 비자, 특별투자비자(SIRV, 단, EO226(행정명령 226호)에 근거한 SIRV만 입국이 허용되며, EO63(관광업 등 투자관련 행정명령)에 근거하여 발급된 경우 제외)</p> <p>- 필리핀 법무부가 발급한 47(a)(2) 비자</p> <p>- 오로라 경제자유구역청, 수빅 자유구역관리청, 바타안 경제특구청, 카가얀 경제자유구역청, 클락개발공사에서 발급한 비자</p> <p>※ 취업비자(9g) 소지자로서 20.12.17. 이후 필리핀을 출국한 사람의 입국 허용</p> <p>- 유효한 ACR I 카드 및 ECC-SRC(Special Return Certificate) 필요</p> <p>※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 △필리핀 국민 또는 과거 필리핀 국민이었던 사람과 등</p>

번호	국가·지역	조치사항
		<p>반하여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및 자녀는 무비자 입국 허용(20.12.7.부터)</p> <p>▶ 21.2.16.부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의 입국 허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비자를 보유하며 입국시점에 비자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비자(9G), 학생비자(9F), 고용창출비자(SVEG), 특별투자비자(SIRV, 관광업 등 투자관련 행정명령 EQ63에 의한 비자) ※ 은퇴비자(SRRV)와 관광비자(9A)를 소지한 자 중 특별입국허가증(entry exemption document)을 가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A 비자소지자의 경우 특별입국허가증을 소지한다 하더라도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입국허가증상의 입국목적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함 - 특별입국허가증이란 필리핀 외교부가 발행한 입국허가(DFA Exemption)를 뜻하며, 1개의 입국허가로 1회 입국만 가능(추가 입출국 시 별도 입국허가 필요) ※ 이민비자 및 비이민비자 소지자는 각기 RP(Re-entry Permit) 및 SRC(Special Return Certificate) 제출 필요 ▶ 입국 전 및 입국 후 하기 조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된 숙소/시설 최소 6박 사전 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숙소는 https://quarantine.doh.gov.ph/category/news-and-events/에서 확인 가능하며, 예약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 거절 가능 ※ 내외국민 구분없이 도착 후 6일째 되는 날(도착 당일을 1일로 계산)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도착 후 14일까지 관할 지자체의 관리하에 자가격리로 전환
173	헝가리	<p>▶ 추후 공지 시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영주권, 거주증 등 헝가리 내 90일 이상 장기체류허가증 소지자의 경우 입국 가능(입국 후 10일 자가격리) ※ 헝가리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적 방식의 입국 신청 가능(입국 심사 시 코로나19 증상 유무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입국 후 10일 자가격리) ※ 외교, 공무, 비즈니스 목적 입국 가능(해당 목적 입국 시 격리면제) ※ 쉐겐협약을 따르고, 코로나19 증상이 없으며, 최종 도착국 이동편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경유 가능(단, 헝가리 내 24시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음)
174	호주	<p>▶ 20.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20.3.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은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시설격리 ※ 21.1.8.부터 모든 국제선 입국자 대상 항공기 탑승 전 최소 72시간 내에 받은 코로나19 PCR 검사의 음성결과 제출 의무화 ※ 동일 공항 내 대기시간 8시간 이내의 경우 무비자 경유 가능(20.5.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시간 8-72시간 이내의 경우 공항 인근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연결 항공편 이륙시간까지 대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경유비자 필요(국경수비대 입국허가 불요) - 단, NSW주에서 8-72시간 대기하는 경우 주정부의 격리 면제 허가 필요 - 주(州)간 이동 등이 필요한 경우 주정부, 연방정부, 보건당국, 국경수비대의 승인 필요
175	홍콩	<p>▶ 모든 홍콩 비거주자의 홍콩 입국 금지(20.4.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21일 이내 영국(20.12.22.부터), 남아공(20.12.25.부터), 브라질 및 아일랜드(21.1.23.부터)에 2시간 이상 머문 경우 홍콩 거주자의 경우에도 입국 금지 ※ 홍콩 거주자의 경우 △입국 시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실시, △20.12.25.이후 입국자 대상 검사 결과 확인 후 정부지정호텔에서 21일 격리 및 격리 중 전자손목밴드 착용(격리 중 11일째 코로나19 검사, 격리 후 19/20일째 코로나19 검사 실시), △선박 및 항공 승무원은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필요 및 입국 후 타액 샘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 탑승 전 72시간 내의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및 21박 정부지정호텔 예약증 소지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국가 : 방글라데시, 벨기에, 에티오피아, 프랑스,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영국, 미국, 터키, 독일, 에콰도르,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캐나다 ※ 20.6.1.부터 홍콩 국제공항을 통한 경유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 절차 없는 24시간 내 환승에 한함(홍콩 경유 중국 출입국 및 자가환승 불가) - 도착 시 발열 검사 후 환승편 게이트로 바로 이동, 승객 간 1.5m 거리 유지

※ EU 회원국(27개)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밀줄 국가는 非셴겐협약 가입국)

※ 셴겐협약 가입국(26개)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밀줄 국가는 非EU 회원국)

■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련 조치 해제 : 12개 국가지역

※ 출발 전 방문하시려는 국가지역 관할 우리 공관(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조치 해제 국가지역(해제 시기)
유럽	▶ 네덜란드(20.7.1.) ^① , 독일(21.1.1.) ^② , 루마니아(20.8.5.) ^③ , 리히텐슈타인(20.7.20.), 몬테네그로(21.1.12.), 몰타(20.7.11.) ^④ , 북마케도니아(20.6.26.) ^⑤ , 슬로베니아(20.9.29.), 알바니아(20.7.1.) ^⑥ , 오스트리아(20.9.28.) ^⑦ , 에스토니아(21.2.15.), 크로아티아(20.12.1.) ^⑧

- ① **네덜란드** : 모든 해외입국자는 출입국 및 경유 시 건강상태확인서(Health Declaration Form) 작성 및 지참 필요(주네덜란드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 코로나19 고위험국(한국 미포함)에서 출발하여 네덜란드에 입국하는 경우 및 네덜란드 경유 시 △도착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및 출발 4시간 이내 실시한 코로나19 신속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출발 12시간 이내 실시한 NAAT* 음성확인서, △음성확인 서약서를 지참하고, △입국 후 10일간 자가격리
 - * PCR, RT PCR, LAMP, TMA, mPOCT 포함하나 혈액검사는 불인정
 - ※ 21.1.23. 00:01부터 일부 국가 출발 여객기 입국 금지
 - 유럽 : 영국(여객선도 입국 금지) / 중남미 :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프랑스령 기아나, 가이아나,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도미니카 공화국 / 아프리카 : 카보베르데, 남아공
- ② **독일** : (직전 10일 체류지 기준) 한국발 독일 입국자의 경우 제한조치 없음 / EU+ 역외지역으로부터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 및 위험지역, 고위험지역,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 출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 실시 중
 -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음성결과서 제출(PCR,LAMP,TMA,항원검사, 항원신속검사), 자가격리 관련(자가격리 예외 인정 등 관련 내용은 주정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 위험지역(덴마크/프랑스/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러시아/폴란드 등)발 해외입국자
 - △입국 전 전자입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입국 후 48시간 이내 음성결과서 제출(원칙은 입국 최대 48시간 전 실시한 검사이나 입국 후 검사 가능), △10일간 자가격리
 - ※ 고위험지역(미국/아프가니스탄/이스라엘/스페인/UAE 등)발 해외입국자
 - △입국 전 전자입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출국 전(항공사) 및 입국 수속시 음성검사결과서 제출(입국 최대 48시간 전 실시한 검사), △10일간 자가격리
 - ※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영국/남아공/브라질/오스트리아 티롤/체코 등 18개국)발 해외입국자
 - (사실상의 입국 금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독일 입국 불가 및 승객 운송 불가
 - 단, 독일 국적자 및 장기체류권자, 일반 공항 내 환승구역에서의 단순 경유, 순수한 우편·화물운송빈 운송수단, 항공기 선박·선원의 귀환, 공중보건인력 이송/구급항공기/이식할 장기 이송 항공편 및 필요한 동행인, 시급한 인도적 사유, IAEA/UN/여타 UN기구의 요청에 따른 입국은 예외이며 체코, 오스트리아 티롤 국경의 경우 국가 시스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종(바이에른주와 작센주에서 선정)에 근무하는 통근자 역시 예외
 - △입국전 전자입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출국 전(항공사) 및 입국 수속시 음성결과서 제출(출국 최대 12시간 전 실시한 검사), △10일간 자가격리(베를린의 경우, 21.2.6.부터 14일간 자가격리, 조기 해제 불허)
 - 특히 음성결과서 제출 의무의 경우 예외가 없고, 항공편 취소 등으로 인해 경유장소가 국제환승구역이 아닐 수 있는바 연방 보건부는 경유 시에도 음성결과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안내 중
 -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음성결과서 제출(PCR,LAMP,TMA,항원검사, 항원신속검사), 자가격리 관련(자가격리 예외 인정 등 관련 내용은 주정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 위험지역(덴마크/프랑스/이탈리아/룩셈부르크/네덜란드/러시아/폴란드 등)발 해외입국자
 - △입국 전 전자입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입국 후 48시간 이내 음성결과서 제출(원칙은 입국 최대 48시간 전 실시한 검사이나 입국 후 검사 가능), △10일간 자가격리
 - ※ 고위험지역(미국/아프가니스탄/이스라엘/스페인/UAE 등)발 해외입국자
 - △입국 전 전자입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출국 전(항공사) 및 입국 수속시 음성검사결과서 제출(입국 최대 48시간 전 실시한 검사), △10일간 자가격리
 - ※ 변이 바이러스 발생국(영국/남아공/브라질/오스트리아 티롤/체코 등 18개국)발 해외입국자
 - (사실상의 입국 금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독일 입국 불가 및 승객 운송 불가
 - 단, 독일 국적자 및 장기체류권자, 일반 공항 내 환승구역에서의 단순 경유, 순수한 우편·화물운송빈 운송수단, 항공기 선박·선원의 귀환, 공중보건인력 이송/구급항공기/이식할 장기 이송 항공편 및 필요한 동행인, 시급한 인도적 사유, IAEA/UN/여타 UN기구의 요청에 따른 입국은 예외이며 체코, 오스트리아 티롤 국경의 경우 국가 시스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종(바이에른주와 작센주에서 선정)에 근무하는 통근자 역시 예외
 - △입국전 전자입국신고서 작성 및 제출, △출국 전(항공사) 및 입국 수속시 음성결과서 제출(출국 최대 12시간 전 실시한 검사), △10일간 자가격리(베를린의 경우, 21.2.6.부터 14일간 자가격리, 조기 해제 불허)
 - 특히 음성결과서 제출 의무의 경우 예외가 없고, 항공편 취소 등으로 인해 경유장소가 국제환승구역이 아닐 수 있는바 연방 보건부는 경유 시에도 음성결과서를 준비해야 한다고 안내 중
- ③ **루마니아** : 고위험 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한국 미포함, 자세한 국가/지역은 주루마니아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 고위험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여행객 대상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하는 경우 자가격리 10일로 단축(격리 8일째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가 음성 및 무증상인 경우, 10일 이후 격리 해제), △입국 10일 전까지 총 2회의 백신접종을 완료한 여행객에 한해 자가격리 의무 면제
 - ※ 영국(북아일랜드 포함)발 입국자 대상 입국 전 48시간 내의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지참 의무(단, 백신접종을 완료했거나 확진 판정 후 14일 이상, 90일 미만인 경우 음성확인서 제출 불요)
- ④ **몰타** : 몰타 정부는 각 국가 및 지역을 녹색, 황색, 적색 세단계로 분류하여 출입국 시스템 운영 중으로 한국은 녹색국가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불요(그 외 자세한 국가/지역 및 조치 내용은 주이탈리아 대한민국대사관 홈페이지 참고)
- ⑤ **북마케도니아** : 해외입국자 대상 별도의 자가격리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지 않으나, 입국 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37도 이상인 경우 코로나19 검사 실시(자부담)
- ⑥ **알바니아** : 단, 그리스는 알바니아에 대한 해상, 육로 이동을 전면 제한(항공의 경우 아테네 국제공항에서만 이착륙 허용), 출국 전 항공사별로 별도 요구사항 확인 필요
- ⑦ **오스트리아** : 21.3.31.까지 EU차원의 역외국경 통제에 상응하는 조치 시행
 - (1) 입국제한 조치
 - (안전국가에서 입국 시) 오스트리아 정부 입국제한 조치 면제
 - 단, 입국 전 최소 10일간 안전국가에 체류한 경우만 해당
 - 안전국가(21.1.15.) : 한국, 그리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바티칸, 싱가포르, 아이슬란드, 핀란드, 호주(21.2.10.부터 일본 제외)
 - (안전국가 외 국가에서 입국 시) EU/EEA 국민, 스위스, 안도라, 모나코, 산마리노, 바티칸 및 적법한 오스트리아 거주허가*를 보유한 외국인의 경우 아래 조건하 입국 가능(21.2.10.부터 영국 제외)
 - * D 비자, Aliens Police Act, the Settlement and Residence Act, the Asylum Act 2005를 통한 거주허가
 - 21.2.10.부터 72시간 전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또는 항원검사) 제시(불가능 시, 입국 후 24시간 이내 PCR 또는 항원검사 실시(비용 자부담))

- 입국 즉시 10일간 자가격리 의무 부과(입국 시 자가격리 신고서 지참)
- 자가격리 중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역대책을 강구하여 출국하는 조건으로 자가격리 종료 가능
- 예외적 입국 가능 외국인: 외교 공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과 가족, 인도지원사업 종사자, 보건 간호 인력, 농/임업분야 계절노동자, 화물기 수송인력, 일상 통근자는 거주비자/거주허가 없이 입국 가능(단, 입국시 72시간내 검사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또는 자가격리 10일 의무)
- (항공기 착륙금지 조치) 21.3.7.까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격한 확산이 진행 중인 국가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의 오스트리아 착륙금지
 - 영국(20.12.22.부터), 남아공(20.12.30.부터), 브라질(21.1.25.부터)
- (2) 입국자 온라인 사전등록제(Pre-Travel-Clearance, PTC System) 실시
 - 시행일 : 21.1.15. 0:00부터
 - 적용 대상 : 항공 및 육로를 이용하는 모든 입국자(오스트리아 국적자 포함)
 - 등록 정보 : 인적사항, 체류예정 주소, 출입국 날짜 및 이동수단(항공편명) 등
 - 온라인 사전등록 방법
 - 오스트리아 보건부에서 관리하는 PTC System 전용 홈페이지 이용
 - 오스트리아 정부포털(www.oesterreich.gv.at)을 통해 동 홈페이지로 이동 가능
 -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특정 양식에 수기로 작성하여 체류 지역 보건소 등 관할 관청(MA15 등)에 직접 제출
 - ※ PTC 홈페이지 주소 및 수기 작성 양식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공지사항 참고
 - 온라인 등록 확인서를 출력 또는 휴대기기에 저장하여 출입국 심사 시 제시 필요
 - 예외 대상 : 단순 경유 승객
- (3) 단순 경유목적 오스트리아 입국 시
 - (EU역내 입국 시) 최종 도착국가(EU 역내 오스트리아 주변국) 정부 발행 입국허가서 등 증빙서류 지참
 - 경유 목적 및 인적사항 등을 기입하는 '경유 확인서' 작성 및 제출(20.8.22. 발효)
 - (EU역외 출국 시) 출국 당일 입국하여 오스트리아 내 정착없이 출국한다는 증빙서류 지참
- ⑧ 크로아티아 : 2021.3.15.까지 △EU/셴겐지역발, △EU 역외국경 통제해제 대상국발, △기타 비EU/비셴겐지역발 △영국 및 남아프리카공화국발 입국자별로 구분하여 입국제한 차등 조치 실시(3.1.)
 - ※ EU/셴겐지역발 입국자
 - 유럽질병통제센터(ECDC) 지정 안전국가(녹색지역발 입국자: 제한없이 입국 가능(단, 비안전국가를 경유한 입국자는 경유지 미체류 사실 증빙 필요)
 - 기타 지역: 입국 기준 48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를 소지하여 입국하거나, 미소지시 입국후 자가격리(10일) 또는 자가격리 기간중 음성판정시 격리해제
 - ※ EU 역외국경 통제해제 대상국발(한국 포함) 입국자
 - 코로나19 관련 무증상 및 확진자 비접촉자는 별도 제한 없이 입국 가능(단, 상기 통제 해제 대상국 이외의 지역을 경유한 입국자는 경유지 미체류 사실 증빙 필요)
 - ※ 기타 비EU/비셴겐지역발 입국자
 - EU/셴겐지역 국민 및 장기체류자: 입국 기준 48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소지하여 입국하거나, 미소지시 입국후 자가격리 및 음성판정시 격리해제
 - 기타 국민: 선원, 긴급/인도적 사유, 상용/경제활동 목적 입국자에 한해 입국 기준 48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소지하여 입국하거나 미소지시 입국후 자가격리 및 음성판정시 격리해제
 - * 음성판정시까지 무기한 자가격리
 - ※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오스트리아(티롤), 탄자니아(잔지바르)발 모든 입국자
 - 입국 기준 48시간 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를 소지하여 입국한 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6일 격리 후 음성판정시 격리해제 끝.